수시연구 2019_03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정보람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시연구 2019-03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서 문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고, 2017년부터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선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있는 역할과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문화다양성 확보를 강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에서 3대 방향 중 하나로 다양성을 설정하는 등 국가정책 전반에서 문화다양성 가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올해 8년차로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과 같은 문화다양성 정책기반 확대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한편 사업 추진방식 및 효과성 제고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문화다양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계와 현장 관계자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정책 확산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설계와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현황진단과 개선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7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 향 자**

연구개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 서 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을 추진,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등 문화다양성 정책기반 확대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한편, 사업 추진방식 및 효과성 제고를 요구받고 있음

○ 따라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관련 환경변화와 대내외적인 요구사항,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종합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사업의 영역 중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무지개다리사업 등),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주간행사 등) 등 3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

○ 문헌분석,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사업현황 및 문제점 진단,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델파이 조사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적격성 및 효율성을 진단을 통해 ①사업형태, ②실행체계, ③사업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조사

2.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정책배경 및 현황

가. 문화다양성 정책의 발전과정 및 특징

○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 및 외국인 대상 복지와 처우개선에서 출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부처 내 '외국인근로자 문화적 지원 과제 탑승팀'을 운영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 4개분야 18개 사업을 발굴·추진

- 2007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였고, 주로 이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집중하였음

○ 2010년 한국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국으로 국제적 의무가 부여,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다양성 법)」 제정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

- UNESCO가 제정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국내 비준 및 발효(2010.7)를 계기로 국내 문화다양성 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다양성 법률은 유네스코 협약 이행에 그 목적이 있음

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문화다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 사업은 세부사업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 하부의 내역사업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해당되며 2019년 기준 2,513백만원 규모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내내역 사업인'문화 간 상호교

류 및 소통 활성화(무지개다리사업, 아카이빙)'는 2,200백만원, '문화다양성 교육'은 160백만원,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은 153백만원 임

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주요 현안 및 문제점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문화적 표현과 향유, 창작에 차별받지 않도록 함에 목표가 있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고 소수계층에 대한 수용도는 낮음

○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다양성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문화다양성 정책 이해도에 차이가 있고 사업의 지향점이 상이함

○ 문화다양성 사업 성과제고 시스템(모니터링과 환류)의 미흡, 성과목표 불투명, 성과지표 부적절 등 지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2014년 법제정 이후 문화 간 소통·교류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등을 본격 추진하면서, 유네스코 협약 및 국내 법령에 명시된 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요구됨에도 재정규모는 오히려 감소 추세

-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정부의 국제적 역할과 의무가 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은 대체로 인정됨

○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이외 소수자와 관계된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어 부처간 협업체계가 중요한데, 타 부처·기관과의 협력이 미흡하여 사업효과 확산에 한계

3.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진단

가. 델파이조사 개요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을 진단하기 위해 사업의 목표와 추진 실적을 정리하고,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정책사업 운영에 중요한 가치인 적격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을 진단하고자 함

○ 1차 델파이조사는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지로 이메일을 활용해 문제인식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선 제안의견 등을 조사하였고, 2차 델파이조사는 1차 결과를 범주화하여 문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음

○ 조사대상자는 문화다양성 정책자문 및 연구(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수측정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계 12명,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현장 및 관계전문가 13명으로 총 25명임

나. 델파이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첫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정책방향과 목표가 불분명하여 현재의 정책 예산규모, 적정사업 형태 등에 대해 판단이 어렵고 성과측정 및 평가와 같은 성과관리가 곤란함

○ 둘째,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는 당초 의도한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 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실태조사 등으로 변화에 대한 추적이 중요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문화영향평가에 지표를 포함하여 다양성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셋째,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사회 분위기 개선, 후속세대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 노력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 방송, SNS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확대할 필요

○ 넷째, 무지개다리사업 진단과 추진주체 관련 의견은 패널들 간의 방향성을 좁히기 어려웠으나, 주관기관 내부 역량관리와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가 사업성과에 중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확인

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가. 문화다양성 중점 사업별 보완 방안

○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무지개다리사업 등),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주간행사 등) 등 3가지 문화다양성 중점 사업별 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개선방안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사업 보완	무지개다리사업 지원방식 개선	– 사업지원 유형화 및 유형별 예산 차등지원 –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자체 책임 강화 – 평가계획 및 평가지표의 사전 제시로 사업성과의 효율화 유도 – 컨설팅 및 평가의 체계적인 운영의 사업의 질적 개선 도모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 범부처 차원의 문화다양성 자료 협조 및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다양성 관련 추진사업 결과물 수집·공유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보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확대	– 온라인 프로그램(3H) 활용 초중등 교사를 대상 교육 참여 확대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net) 대상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지원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담당자 교육 강화	– 전문가 인식확산 교육과 지자체 행정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사업 보완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운영 성과공유 강화	– 문체부–지자체 협업으로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전국 확산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및 홍보·캠페인 강화(SNS 활용, 포상)
	문화다양성 지표 확정 및 추세분석 실시	–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수용 수준, 국민과 지자체 정책의 다양성에 대한 변화 등을 분석

나. 문화다양성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은 ①문화다양성 정책체계 및 정책방향 재정립, ②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제고, ③유네스코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

○ 첫째,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총괄부처와 실행부처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포함한 법정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기본계획은 범정부적 종합계획으로 다문화가족정책 혹은 외국인정책 등 타 부처의 역할과 차별되어야 하며,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목표,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설계가 필요

○ 둘째, 사업예산 심의 및 평가 단위는 세부사업 단위로 문화다양성 보호 미 증진 사업의 성과관리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단위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체계 변경

○ 셋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문화전문가와 문화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접근성 보장, 디지털 문해 교육,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사업을 확대

- 디지털 관련 사업은 문화다양성 주무부서 외에도 여러 부서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협업 필요

- 더불어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함께 문화다양성 아시아태평양 위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과 교류 확대, 개발도상국에 지원 등 문화외교 역량을 갖추고 관련 사업영역 발굴·확대 필요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6

제2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정책배경과 현황

제1절 문화다양성 정책의 발전과정 및 특징 ····· 9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의 및 주요사업 ····· 9
2. 2000년~2009년 문화다양성 정책 ····· 11
3. 2010년~현재 문화다양성 정책 ····· 13

제2절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현황 ····· 21
1.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 23
2.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 30
3.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사업 ····· 35

제3절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주요 현안 및 문제점 ····· 40

제3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진단

제1절 델파이 조사 설계 ····· 47

제2절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 50
1. 사업형태에 대한 평가 ····· 50
2. 실행체계에 대한 평가 ····· 55
3. 정책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평가 ····· 60

제3절 시사점 ····· 63

Contents

제4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제1절 문화다양성 중점 사업별 보완 방안 ····· 67

1.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사업 보완 ····· 67
2.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보완 ····· 77
3.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사업 보완 ····· 81

제2절 문화다양성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 87

1. 문화다양성 정책체계, 정책방향 등의 재정립 ····· 87
2.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제고 ····· 91
3. 유네스코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 9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97

참고문헌 ····· 99

ABSTRACT ····· 101

부록 : 델파이 조사지 ····· 105

표 목차

〈표 2-1〉 국내 문화다양성 법률과 유네스코 협약에서 문화다양성 정의 ····· 10
〈표 2-2〉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관련 법적근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10
〈표 2-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 14
〈표 2-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 15
〈표 2-5〉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상황 ····· 17
〈표 2-6〉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 현황 ····· 18
〈표 2-7〉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 20
〈표 2-8〉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구조 현황 ····· 22
〈표 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현황 ····· 22
〈표 2-10〉 2018년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구성 ····· 25
〈표 2-11〉 연차별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2019년 기준) ····· 26
〈표 2-12〉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선정 내역(2019년) ····· 26
〈표 2-13〉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및 프로그램(2018.3월~2020.2월) ····· 31
〈표 2-14〉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및 프로그램(2016.3월~2018.2월) ····· 32
〈표 2-15〉 2019년 권역별 문화다양성 포럼 주요내용 ····· 37
〈표 2-16〉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연구 내역 ····· 39
〈표 2-17〉 제62차 UN 사회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2017.9.) ····· 41
〈표 3-1〉 델파이조사 응답자 구성 ····· 48
〈표 3-2〉 응답자 수에 따른 CVR 최소값 ····· 49
〈표 3-3〉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예산 규모 관련 델파이 결과 ····· 51
〈표 3-4〉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대표할 수 있는 사업형태 관련 델파이 결과 ····· 54
〈표 3-5〉 무지개다리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관련 델파이 결과 ····· 56
〈표 3-6〉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관리 관련 델파이 결과 ····· 58
〈표 3-7〉 무지개다리사업 실행체계의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구분 지원관련 델파이 결과 ····· 60

Contents

〈표 3–8〉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평가 방식 제안 관련 델파이 결과 ····· 62
〈표 4–1〉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사례 ····· 68
〈표 4–2〉 무지개다리사업 운영 변화 ····· 69
〈표 4–3〉 주관기관 유형별 지원예산 규모 기준(안) ····· 70
〈표 4–4〉 문화다양성 측정지표 개발연구 현황 ····· 85
〈표 4–5〉 2017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 88
〈표 4–6〉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구조 현황 ····· 91

그림 목차

[그림 2–1] 문화비전 2030 비전 및 가치 ····· 19
[그림 2–2] 무지개다리사업 추진체계 ····· 24
[그림 2–3]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사이트(www.cda.or.kr) ····· 29
[그림 2–4]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추진체계 ····· 30
[그림 2–5] 문화다양성 교육 · 연수 추진체계 ····· 33
[그림 2–6] 2019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 36
[그림 2–7] 문화다양성 521 한가지 약속 캠페인 페이스북 계정 ····· 38
[그림 3–1] content validity ratio(CVR) 산출 공식 ····· 49
[그림 4–1]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체계 개편 안 ····· 92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12년부터 문화다양성 대표사업 추진, 2014년 문화다양성 법적근거 확보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을 추진,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예산은 2,513백만원임

○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법적근거를 확보,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사업(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등을 본격 추진

□ 문화다양성 사업의 추진방식 조정 및 효과성 제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주요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은 8년차로 사업경험이 누적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등 문화다양성 정책기반 확대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단년도 지원에서 다년도 지원방식으로 지역 주관기관 선정방식 개선[1], 성과제고 시스템(모니터링과 환류) 마련, 대표 콘텐츠 발굴 등 사업 추진방식 및 효과성 제고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1) 2017년부터 3년간 다년지원체계를 도입하였음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성과·한계 점검을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지속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화다양성 인식과 소수계층에 대한 수용도는 낮은 실정이고, 지자체별 문화다양성 정책 이해도에 차이가 있는 한계 봉착

○ 따라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관련 환경변화와 대내외적인 요구사항,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종합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지속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와 수용성 부족 한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더불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정책 확산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시대적 요구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추진방안을 고려하며, 특히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문화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을 제안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정책적 배경 및 현황 분석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사업의 영역 중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무지개다리사업 등),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등) 등 3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관련 주요 현안 및 문제점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 예산서, 외부 지적사항(국회 예·결산 검토, 보조사업 운용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보고서를 수집 검토함

– 관계 전문가, 개별사업 선정 및 평가위원, 개별사업 참여기관 등의 의견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개선방안 도출

– 사업현황 및 문제점 진단,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과 이에 기반한 델파이조사 등을 종합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사업형태, 실행체계, 정책효과성 제고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분석)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문화다양성정책 관련 사업 설명자료 및 예산서, 정채사업 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하는 문헌분석(literature review)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담당자와 참여자, 학계 전문가 그룹과 심층인터뷰, 자문회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함

○ (델파이조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에 포함된 무지개다리사업, 교육, 아카이브, 행사 등의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을 전문가 집단 델파이(delphi survey) 조사를 통해 분석함

- 델파이 조사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적격성 및 효율성을 진단을 통해 ①사업형태, ②실행체계, ③사업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은 유사사업 연구 경험자, 개별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등 2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에 걸쳐 조사하였음
-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로 의견을 수렴하고, 2차 델파이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내용을 범주화하였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음

제2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정책배경과 현황

제1절

문화다양성 정책의 발전과정 및 특징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의 및 주요사업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함

○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은 UNESCO가 제정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국내 비준 및 발효(2010.7)를 계기로 본격 추진됨에 따라 유네스코 협약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

-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지는 것으로 정의함
- 더불어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 2-1〉 국내 문화다양성 법률과 유네스코 협약에서 문화다양성 정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한국, 2014.5.28. 제정)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위원회, 2005.10.20. 채택)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4조(정의) 1.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 간 소통·교류 지원,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등 사업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표 2-2〉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관련 법적근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연차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2000년~2009년 문화다양성 정책

□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 및 외국인 대상의 복지와 처우개선, 정착지원 추진

○ 2000년대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대상 정책을 의미하였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본격적으로 각 정부부처에서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 정책을 추진

–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2006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동화정책으로서 다문화(Multiculture) 정책이 부상

○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외국인노동자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와 시혜 관점에서 처우개선과 한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였음

○ 2007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였고, 주로 이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집중하였음

– 2008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과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2012)과 이 수립·시행됨

○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부처가 합동 추진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 존중과 내국인·이주민간의 상호 문화적 소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한국어 교육 등 대상에 중점을 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

□ 문화체육관광부, 다양한 소수문화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 정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2017 문화예술정책백서'에 따른 다문화정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부처 내 '외국인근로자 문화적 지원 과제 탑승팀'을 운영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 4개분야 18개 사업 발굴 추진하였음

○ 2006년에는 '다문화사회 대비 문화적 지원 TF팀' 운영을 통해 다문화 정책방안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하였고, 2007년에는 문화다양성 전담부서인'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고'다문화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음

- '다문화정책 추진방향'은 다양한 소수자 문화의 공존과 이주민-내국인간의 문화적 소통에 초점을 두고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문화다양성 존중, 문화향유권 확대 등을 계획하였음
- 구체적으로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 제정 검토와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주민 문화 전용공간 확충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국민인식 개선 프로그램 추진 등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관점의 다문화사회정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인식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음

○ 당시 이미 정부 내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에서도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차별화된 다문화 정

책영역과 역할을 요구받았음

- 2008년 11월 총리실 주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보고서에서 문체부 다문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른 다문화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장기적, 포괄적인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음

3. 2010년~현재 문화다양성 정책

□ 2010년 한국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국으로 국제적 의무가 부여

○ 2000년 중반부터 국내적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이행, 국제적으로 문화다양성 협약 발효 등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필요

○ UNESCO가 제정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국내 비준 및 발효(2010.7월), 한국은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협약 당사국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 유네스코는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에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됨
- 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할 위험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 존재를 결정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정부 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제8조), 4년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취한 조치를 유네스코에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함(제9조)

○ 한국도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제적 의무가 발생되어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행하고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표 2-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 (당사국) 2017년 기준 145개국
- (특성) 다양한 예술적 표현, 지역문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인류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해
- (주요내용)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 / 문화다양성 보호와 인간 존엄성 존중 및 소수자와 원주민의 자유와 인권 존중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권리 보장 / 창의성의 원천인 문화유산 보존,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의 특수성 인지 / 문화산업의 육성

□ 다문화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요구

○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각기 다른 민족,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동등하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하고 표현의 다양성 인정이 중요해지면서 다문화정책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한편 이주민 역사가 짧고 단일민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다문화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주민 지원보다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와 차이에 대한 인정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

○ 국무총리 주재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보고(2012. 4. 18)에서 문화다양성 기반의 다문화정책 추진방향, 기재부 주관 제2차 중장기전략위원회 보고(2012. 6. 4)에서 미래 다문화사회 대비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등의 논의를 구체화함

○ 2012년 발표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적응 중점지원 및 시혜적 지원에서 상호존중 문화와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기본 관점을 재정립하였음

 –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강조하며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의 목표 하에 86개 정책과제를 제시

○ 즉 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에 관심을 두던 다문화정책이 점차 사회구성원간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이주민 대상의 다문화 정책에서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을 추진

□ 전부처 협력 다문화 인식개선 추진, 문체부 사회 인식개선 분야 역할분담

○ 전 부처가 협력하여 다문화인식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문화부의 문화다양성 기반 다문화정책 추진 필요(2012년 4월 18일, 총리실 주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등 주도적인 다문화사업 개발을 요구받음(국회 문방위 2010년 예산검토보고서)

○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 추진 시, 인식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2012년 8월 17일,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다양성 정책기반 마련

○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2014.5.28.)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2-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정의 및 정부의 책무,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

○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 차이,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음

○ 이 법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이 주변국과 세계적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음

□ 2014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본격 추진

○ 2014년 문화다양성 법 제정을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 실시되던 다문화가족 대상의 정책을 포함하여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정책을 본격 추진하였음

- 문화다양성 존중 및 문화적 다원주의를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서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 2014년부터 일반인의 수용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반인 및 대학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일반국민 인식개선

콘텐츠 온라인제공 등을 추진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 시설에 문화다양성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도서출판 지원, 문화다양성 존중에 기초한 인식개선 영상 제작・지원 등 추진
- 일반국민 인식개선 콘텐츠의 온라인 제공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및 문화콘텐츠 발굴・개발・축적

○ 2015년부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문화다양성 정책평가 및 분석, 2016년부터 문체부, 교육부 협업으로 연구학교 선정 및 직무연수 사업 추진 등 사업영역을 확대함

□ 2016년 이후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확산

○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문화도시 선정 및 도시재생 사업 등에 문화다양성 측면의 시각과 내용이 적용, 확장되고 있는 실정

-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중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전라남도에서 조례제정을 시작, 2018년 전국 13개의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조례의 주요내용은 법률의 주요내용과 동일하나, 그 외 지역협력체 운영 등 지역적 차원의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함

〈표 2-5〉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상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12.1.
2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
3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2.13.

연번	조례명	제정일
4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3.13.
5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3.22.
6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5.18.
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6.2.
8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2017.6.14.
9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10.
10	서울특별시 구루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16.
11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30.
12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2017.12.28.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8.1.5.

□ 2017년부터 한국은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선출, 선도적 역할 부여

○ 2017년부터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임기 2017.6~2021.6)으로 선출되어 정부의 국제적 역할과 의무가 강화됨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은 145개국, 이 중 위원회는 24개국으로 구성되며 위원국들은 대륙별로 6개 그룹으로 활동
- 한국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 간 위원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필요

〈표 2-6〉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 현황

- (위원국 개수) 24개국, 임기 4년
* 6개 그룹 중 아시아태평양그룹 위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 (위원국 회의) 매년 1회 이상
- (위원국 역할) 대륙별 회원국의 대표로 활동

○ 2018년 12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 위원국의 부의장국으로 선출 등 국제적 역할 강화

□ 현 정부 국정과제 67-4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설정

○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정과제 67-4를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로 설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다양한 인디문화콘텐츠 지원 및 전통문화 진흥 지원, 교육 및 캠페인, 문화간 소통·상호교류를 위한 사업(무지개다리 사업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등의 내용임

□ 문화체육관광부 중장기 비전(문화비전 2030)의 방향으로 ‘다양성’ 강조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문화비전 2030」을 통해 ‘사람이 있는 문화’의 정책기조를 발표하고, ‘사람이 있는 문화’를 위한 3대 방향으로 자율성(개인의 자율성 보장), 다양성(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창의성(지역 문화분권 실현)을 설정하였음

–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에는 ①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②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③지역 문화분권 실현이란 의제가 있음

– 다양성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가치로 국가는 문화다양성을 보호 및 확산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하고자 함



[그림 2-1] 문화비전 2030 비전 및 가치

〈표 2-7〉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년도	주요 내용
2005	– 문화체육관광부 부처 내 '외국인근로자 문화적 지원 과제 탑승팀' 운영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 4개분야 18개 사업 발굴 추진
2006	– 문화체육관광부 부처 내'다문화사회 대비 문화적 지원 TF팀' 운영 – 다문화정책 방안과 문화적 지원방안을 연구
2007	– 문화체육관광부 부처 내 문화다양성 전담부서인'다문화정책팀'을 신설 – '다문화정책 추진방향'발표, 소수자 문화의 공존과 이주민–내국인간의 문화적 소통에 초점을 두고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문화다양성 존중, 문화향유권 확대 등을 계획
2010	– UNESCO「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국내 비준 및 발효(2010.7월)
201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2014.5.28.) – 기존에 실시되던 다문화가족 대상의 정책을 포함하여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정책을 본격 추진
2017	–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선출(임기 2017.6~2021.6) – 국정과제 67–4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설정
2018	– 문화체육관광부 중장기 비전(문화비전 2030)의 방향으로'다양성'강조, 3대 방향으로 자율성(개인의 자율성 보장), 다양성(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창의성(지역 문화분권 실현) 설정

제2절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주요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본격 사업추진을 확대해 왔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 사업은 세부사업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 하부의 내역사업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해당되며 2019년 기준 2,513백만원 규모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내내역 사업으로'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사업(무지개다리사업, 아카이빙)',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 등이 구성되어 있음

-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 단체, 문화단체 등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지개다리사업과 관련 아카이빙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전통을 고려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연수, 학교 내 문화다양성 연구학교(서울, 부산, 대구, 경남)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임
-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은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국(2017~2021)으로서 역할 이행,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 운영 ,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 등임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서 상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정부 예산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예산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5단계로 구성되며, 정부의 기능(부처), 정책, 프로그램(사업)의 계층구조를 나타냄
-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 단위사업은 세부사업 성격별 묶음, 세부사업은 성과관리 최소단위임
- 성과관리 단위는 아니지만 세부사업은 지출용도에 따라 내역사업, 내내역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2-8〉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구조 현황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창의적 문화행정구현	문화·인문진흥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 문화다양성 교육 -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내내역 사업인‘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무지개다리사업, 아카이빙)은 2,200백만원, ‘문화다양성 교육’은 160백만원,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은 153백만원 예산임

〈표 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계		2,969	2,513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 다양한 문화적 표현 및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확대 프로그램(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운영	2,584	2,200
문화다양성 교육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 : 40백만원(4개교) -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120백만원	160	160

사업명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		**225**	**153**
–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 캠페인 홍보	200	122
–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	–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 운영 –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	25	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도 예산·기금 사업설명서

1.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사업은 지역에서 기획하는 문화다양성사업을 지원하고, 문화다양성 아카이브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2,200백만원임(2018년 2,584백만원)

가. 무지개다리사업

1)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문화 공공기관에 공모로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 무지개다리사업은 광역·기초 문화재단 및 공공문화기관 대상 공모·선정을 통해 지역 내 소수문화, 세대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의 문화예술 교류 및 소통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함

– 사업 주관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고 2013년에는 한국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였음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지원(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 간 소통과 교류 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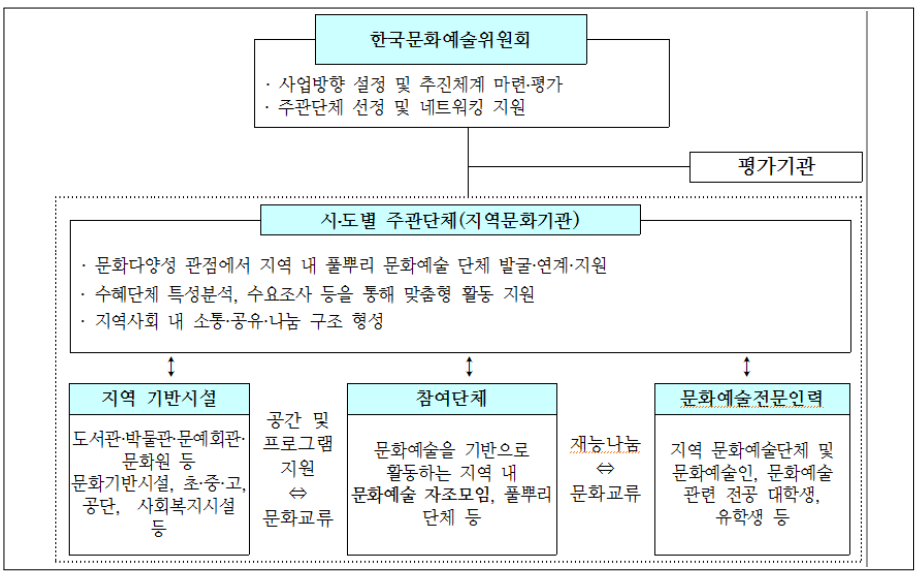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단체(지역문화재단) 선정, 관리 및 평가하고, 주관단체는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발굴·연계

·활동 지원함

-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다양성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5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1차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2차 PT 발표를 통해 사업 주관기관을 선정
- 주관기관은 지역의 문화, 인구 구성, 문화자원 등 특성을 고려한 사업 모델 발굴, 지역민 통합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매년 사업운영 성과평가와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전문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관기관별 사업이해도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워크숍과 전문가 강연을 추진하고 있음

- 문체부 보조사업 추진기관 간 네트워크 및 지자체 및 교육청 관련 사업 추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책추진 기본방향, 매뉴얼 등 확산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안내

[그림 2-2] 무지개다리사업 추진체계

2) 추진현황 및 경과

□ 문화다양성 기반 형성, 문화다양성 가치 발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추진

○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다양성 기반 형성(주제기반, 협력기반, 인력기반), 문화다양성 가치 발굴(소수문화 중점 프로그램, 문화교류 중점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공유중점 프로그램, 콘텐츠중점 프로그램) 등 유형에 맞춰 사업을 추진

○ 2018년 무지개다리사업은 27개 운영기관에서 '문화다양성 기반 형성', '문화다양성 가치 발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등 3개 정책 추진전략, 7개 세부범주, 25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음

〈표 2-10〉 2018년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구성

추진전략	세부범주	프로그램 수	구성비
문화다양성 기반형성	주제기반 프로그램	37	14.3%
	협력기반 프로그램	35	13.6%
	인력기반 프로그램	30	11.6%
	소계	102	40.2%
문화다양성 가치 발굴	소수문화 중점 프로그램	23	8.9%
	문화교류 중점 프로그램	51	19.8%
	소계	74	28.7%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공유중점 프로그램	50	19.4%
	콘텐츠중점 프로그램	32	12.4%
	소계	82	29.9%
총계		258	100%

자료 : 문화디자인자리(2018) 2018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무지개다리사업 8년차 진입, 2019년 26개 지역기관 수행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2019년 지역에서 무지개다리 수행경험이 8년차에 진입한 기관이 등장하는 등 문화다양성 사업추진 노하우가 누적되는 동시에 관련 참여자 수도 증가 추세

〈표 2-11〉 연차별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2019년 기준)

연차(개소수)	기관명
8(4개소)	광주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
7(4개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성북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6(3개소)	구로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5(4개소)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종로문화재단/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문화재단
4(2개소)	김포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3(3개소)	세종시문화재단/ 영주문화관광재단
2(4개소)	도봉문화재단/ 영월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복합문화지구누에)
1(3개소)	대전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충주중원문화재단

○ 무지개다리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13년에는(2012년 시범사업) 13개 지역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9년 현재 26개 지역 기관(기존 23개, 신규 3개)이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 1개 주관기관 당 4천만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2017년부터 다년지원

○ 2019년도 무지개다리사업 민간경상보조 총 지원예산은 17억 4천만원으로 지역규모 및 사업내용에 따라 1개 주관기관 당 4천만원 ~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함

〈표 2-12〉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선정 내역(2019년)

(단위 :천 원)

구분	주관기관명	사업명	지원금액
기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따로 또 함께_문화다양촌(村) 경남	70,000
	광주문화재단	우리누리(URI-N-URI)	90,000
	구로문화재단	구로채운_사이의 공동체를 이어내는 문화자주성	90,000
	김포문화재단	多幸-다양한 행복	85,000
	김해문화재단	문화공존 김해 ; 다양성을 그리다	90,000
	도봉문화재단	다양성 연구소	45,000
	부산문화재단	공감 메이커	90,000

구분	주관기관명	사업명	지원금액
	부천문화재단	부천다양성 다다(多多)	90,000
	성동문화재단	문화다양성마을 – 다양성洞!	70,000
	성북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동네가 우주대!	60,000
	세종시문화재단	多화만사성	55,000
	영월문화재단	영월 문화 다방	40,000
	영주문화관광재단	잇다, 그리고 있다. 연결하다, 그리고 이미 共存한다.	45,000
	완주문화재단	다름의 가치	45,000
	은평문화재단	은평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똑똑"	50,000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로 소통하는 다다익산(多多익산)	100,000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디아스포라영화제	100,000
	인천문화재단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	60,000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남도 오작교 가장자리를 잇다 Ⅱ	60,000
	종로문화재단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80,00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다양성에 스미다	65,000
	충남문화재단	서로, 소리	80,000
	충북문화재단	오색빛깔 조약돌	60,000
신규	대전문화재단	우리多문화人	40,000
	영등포문화재단	우정과 환대의 영등포	40,000
	충주중원문화재단	무지개다리 리어카	40,000
총 지원예산 (민간경상보조)			1,740,0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arko.or.kr)

○ 2017년부터 단년도 지원에서 3년간 다년 지원으로 개편하여 사업 운영의 연속성 확보하고자 하며, 단 3년간 지속지원 결정의 경우에도 매년 사업성과 심의를 통해 지원범위와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및 평가 강화 노력

○ 2018년부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확인을 위해 문화다양성 평가지표를 참가자 만족도에서 참가자 인식제고로 수정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 및 이해도 제고, 소통과 교류의지 확대 및 실천 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제고 정도를 산출

○ 한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선사항 도출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1)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사업을 운영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사업은 문화다양성 기반의 자료를 수집 및 인터넷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 3천 1백만원으로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

- 2012년 아카이브 구축, 2014년까지 서비스 고도화, 자료수집 등을 국립예술자료원을 통해 추진하였고, 2015년 주관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 현재까지 아카이브운영 사업을 주관
- 문화다양성 사업결과물(사진, 영상, 신문기사 등)을 온라인 아카이브 업데이트하고(www.cda.or.kr) 이를 SNS와 연계하여 공유

2) 추진현황 및 경과

□ 무지개다리사업, 교육, 주간행사 등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관련 자료 수집

○ 무지개다리사업, 교육, 주간행사 활동을 통한 콘텐츠,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지원사업 결과물, 문화다양성 관련 언론보도 자료 등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함

– 무지개다리사업 행사, 주간행사, 캠페인, 교육 등 관련 현장 자료와 지역별 추진된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결과물 아카이빙

○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참여 기관의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 업로드 의무화(매월 1회 이상)를 통해 자체적인 자료 수집 추진



[그림 2-3]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사이트(www.cda.or.kr)

□ SNS 활용, 뉴스클리핑 등 아카이브 사이트 홍보

○ 페이스북 메인 페이지 배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페이스북 등 홍보를 통해 아카이브 사이트 방문자를 확대

○ 문화다양성 관련 기관 및 언론보도 자료 수집과 문화다양성 관련 뉴스클리핑을 통한 행사 및 사업 공유

2.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문화다양성 교육사업은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160백만원임(2018년 16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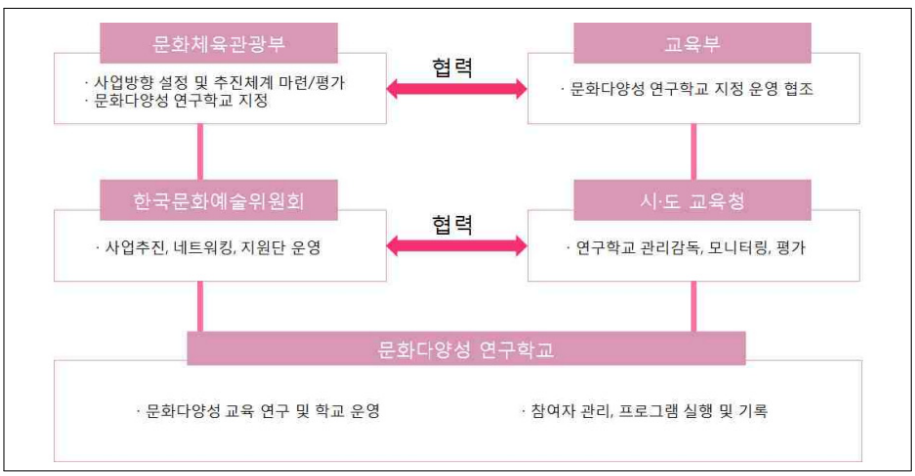
가.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1)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 문체부, 교육부 협업으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지원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는 유·초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와 교육부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최초 연구학교를 선정하였음

○ 교육부 연구학교 운영기관에 신청한 기관의 교원, 지역교육청 장학사 및 장학관 대상 지원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2-4]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추진체계

2) 추진현황 및 경과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4개 지정·운영(2018~2022년 기간)

○ 연구학교는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및 가치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는 2016년 최초 선정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연구학교를 지정, 2018년~2020년 기간동안 4개 연구학교(4개학교/유치원1개교, 초등학교 3개교)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 부처에서 연구학교 요청시 공모를 통해 학교장 신청을 접수, 지자체 교육청 심사를 통해 연구학교가 선정됨

– 2018년 연구학교 운영기관(2018.3월~2020.2월) : 충북 금왕유치원, 부산 현곡초등학교, 경기 능원초등학교,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 2016년 연구학교 운영기관(2016.3월~2018.2월) : 서울군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산덕천유치원, 대구성서초등학교, 김해합성초등학교

〈표 2-13〉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및 프로그램(2018.3월~2020.2월)

지역	연구학교	사업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유치원	다름-이해-나눔-소통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유아의 감수성 신장
부산광역시	현곡초등학교	달달한 마주대화, 문화다양성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창의적 문화역량 강화
경기도 용인시	능원초등학교	GC(글로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공동체 역량 신장
광주광역시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학생 삶+plus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더불어 행복한 감성 키우기

*자료: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시스템(www.cda.or.kr)

〈표 2-14〉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및 프로그램(2016.3월~2018.2월)

지역	연구학교	사업명
서울특별시	서울군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개발[문화예술교육중심]
부산광역시	부산덕천유치원	多가치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유아의 문화 감수성 기르기
대구광역시	대구성서초등학교	예술매체를 활용 문화다양성교육을 통한 문화 간 대화 능력 함양 방안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합성초등학교	문화 공감 200%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

*자료: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시스템(www.cda.or.kr)

□ 학교 내 문화다양성 교육 모범사례 개발·확산

○ 문화다양성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종류인 시범학교를 운영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2016~2017년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검증된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 도서 확산

○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내 문화다양성 교육활동 및 교육자료 개발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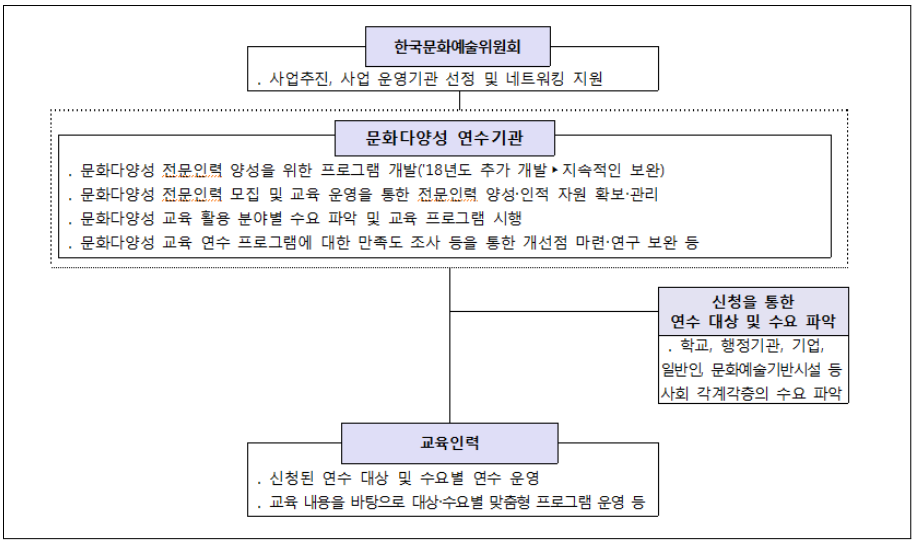
나. 문화다양성 교육·연수

1)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연수 사업 추진

○ 문화다양성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문화다양성 인식수준 제고 및 다양한 문화 간 공존과 조화의 가치 함양,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반 조성하고자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다양성 연수기관을 선정, 관리 및 평가하고, 문화다양성 연수기관은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2-5] 문화다양성 교육 · 연수 추진체계

2) 추진현황 및 경과

□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대상 문화다양성 직무 연수 추진

○ 교육현장의 다문화 가정 학생 중심의 지원 및 동화 정책의 한계점 도달에 따른 교육개선 수요 발생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직무 연수를 추진

○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필수 및 확인사항 등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 2016년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2017년 온라인 직무연수 프로그램(3H) 개발

○ 개발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과 온라인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맞춤형 문화다양성 직무 교육을 운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대상 직무교육 추진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계 인식을 확산하고 잠재적으로 문화다양성 전문인력으로 유입

○ 19년부터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직무연수 결과를 토대로 교육현장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추진

□ 행정인력 및 실행주체 대상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 지역의 다양한 소수문화 구성원과 문화예술행정 인력(공무원, 재단임직원 등), 실행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현장 밀착형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 문화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인적 자원 확보 및 관리
- 사회 전반 교육 매개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연수 및 신규 희망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 추진

○ 기존에 개발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문화다양성 법률, 관련 문헌, 연수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여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에 맞춘 문화다양성 참여·소통 프로그램으로 기획되며 문화다양성 인식(기초), 공유 및 확산(심화) 프로그램으로 구분 운영됨

- 기초 : 생활관습에 따른 상대에 대한 정보 없이 편견 고착화된 각 개인에 대한 자기환기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접근제시
- 심화 : 2015년, 2016년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공유 및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

3.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사업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사업은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및 인식 제고 캠페인,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 등으로 2019년 예산은 153백만원임(2018년 225백만원)

가.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1)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협업으로 문화다양성 주간기간 기념행사 추진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2002년 UN총회에서 지정한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을 포함하여 1주일간 기념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 됨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참여를 유도하고 무지개다리 주관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에서 문화다양성 주간기간 기념행사를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무지개다리 지원 사업 추진기관(지역문화재단 등)과 협력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기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문화체육광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문화다양성 주간기간 기념행사 개최도시를 선정하였음

– 17개 광역시, 도 대상 개최도시 공모 선발을 통한 지역자치정부의 관심 유도 및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인지도 확산 추진

2) 추진현황 및 경과

□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행사 추진

○ 문화다양성 정책 및 문화다양성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 무지개다리사업을 주관하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행사(축제, 공연, 전시, 영상상영, 포럼, 캠페인 등)를 추진

○ 2019년 문화다양성 주간기간 동안 전국 26개 기관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행사에는 전국 27개 지역, 7만여 명이 참여하였음

- 2019년 서울, 부산, 경남, 전남, 충북, 충남, 인천, 광주, 대전, 부천, 김포, 김해, 익산 등, 25개의 지역문화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에서 기념행사를 추진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2015년부터'차이를 즐기자'를 슬로건으로 하고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림 2-6] 2019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 문화다양성 정책 확산 및 발전을 위한 권역별 포럼 운영

○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장의견 수렴 및 소통, 문화다양성 정책 공론화하는 등 문화다양성 정책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한 권역별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운영

– 2019년 서울 영등포,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북 청주 문화다양성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권역별 문화다양성 포럼 개최

○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담론을 구체화하고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여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인식을 확산

〈표 2-15〉 2019년 권역별 문화다양성 포럼 주요내용

권역	세 부 내 용
서울 영등포	■ 우정과환대의 영등포 : 문화다양성포럼 ○ 일시 : 2019.5.25(토) 16:00~18:00 ○ 장소 : 아시아미디어팩토리 ○ 내용 – 우정과 환대의 영등포 무지개다리사업 소개 – 영등포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의제 발굴
경남 김해	■ 경남 문화다양성 포럼 ○ 일시 : 2019.5.24(금) 14:30 ○ 장소 : 김해문화의 전당 시청각미디어센터 ○ 내용 : 경남문화다양성 조례 제정과 향후과제 – 문화다양성 포럼 – 문화다양성 팟캐스트&토크 콘서트
전북 익산	■ 호남권 문화다양성 포럼 ○ 일시 : 2019.5.21.(화) 14:00~18:00 ○ 장소 :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 내용 : 문화다양성 기반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 익산·완주·광주·전남 문화재단 네트워크 – 호남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문화 다양성과 도시재생·문화도시 포럼 – 문화재생 소프트웨어 구축에 있어 문화 다양성기반에 대한 공통의 가치 인식과 문제의식
충북 청주	■ 제2회 충청권문화다양성 정책포럼 ○ 일시 : 2019.5.21.(화) 14:00~18:00 ○ 장소 : s컨벤션 ○ 내용 : 충청권 문화다양성의 현재와 미래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필요성 –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국내외 사례와 충청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충청권 문화다양성의 현주소와 나아가야할 방향

*자료: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시스템(www.cda.or.kr)

□ 다양한 문화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운영

○ 문화다양성 정책 및 문화다양성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며, SNS를 활용하여 관련 홍보물을 적극 확산

–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동영상, 포스터 등) 제작, 배포

○ 대국민 인식 확산 캠페인 '521 한가지 약속'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활용 홍보하고, 네이버 해피빈(happybean)을 통한 캠페인 등을 연중 추진



[그림 2-7] 문화다양성 521 한가지 약속 캠페인 페이스북 계정

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

□ 문화다양성 관련 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은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이행사항과 국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 및 정책 이행사항임

○ 문화다양성 협약에 의해 국가보고서, 실태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사 및 연구된 주요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국으로써 의무로 4년마다 국가보고서의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2014년, 2018년 2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 및 세부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2014년과 2017년에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측정 및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표 2-16〉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연구 내역

년도	보고서 명
201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전략 기초연구 문화주체로서의 이주민 지원 및 정책방안 연구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전략수립 방안연구
2014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지수 측정 연구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2016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2017	2016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2018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2017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제3절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주요 현안 및 문제점

가. 종합적인 문화다양성 정책 전략 필요

□ 법적 기반, 국가적 차원의 사업추진 필요성에서 불구, 예산 축소

○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서의 위상,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근거 등 사업추진 중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에도 문체부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예산은 25억원 수준

○ 2014년 법제정 이후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 간 소통·교류 지원,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등 사업이 협약 및 법령에 명시된 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요구됨에도 재정규모는 오히려 감소 추세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 : 2013년 2,970백만원, 214년 3,370백만원, 2015년 3,530백만원, 2016년 2,990백만원, 2017년 2,694백만원, 2018년 2,969백만원, 2019년 2,513백만원

○ 그러나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문화다양성 증진 관련 내역사업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내역사업의 경우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정부의 국제적 역할과 의무가 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대체로 인정됨

– 문화다양성 증진 관련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함

○ 바람직한 모니터링과 환류시스템, 성과지표 등은 모두 정책의 목표에 따라 설정되는 것인데 이를 나타내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실정으로 한계에 노정

나. 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성과관리 체계 필요

□ 실질적인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미흡, 다문화주의 수용도 낮은 한계

○ 제62차 UN 사회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2017.9)를 통해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와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 받음

– 그 외, ①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권한 강화, ②국가에 의한 공공조달, 융자, 원조, 보조금 지급 등을 국내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즉 인권 준수 여부와 연계

– ③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채택 시행 및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관한 인식 제고, ④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철폐, ⑤외국인 및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⑥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장, ⑦노인빈곤,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 강화

– ⑧노숙자를 위한 주거정책 강화 및 임차인 보호, ⑨낙태의 비범죄화를 통한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 ⑩소외계층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보장 등의 우려 및 권고사항 등 포함됨

〈표 2-17〉 제62차 UN 사회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2017.9.)

–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 수용도가 낮음을 지적,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이 부족하다는 우려 표명 –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문화적 표현과 향유, 창작에 차별받지 않도록 함에 목표가 있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고 소수계층에 대한 수용도는 낮음

○ 김면(2017)의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문화체육관광부)」 결과 '우리 사회가 문화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9%,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2.3%에 그침

– 다양한 소수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냐는 문항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사업의 효과성과 성과관리 필요

○ 무지개다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성과지표의 보완, 지원방식 수정 등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운영과 사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제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성과제고 시스템(모니터링과 환류), 대표 콘텐츠 미흡을 지적받음(2018, 기획재정부)

– 사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대부분 투입(input) 지표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의 근본적인 목표인 효과성(output)과 결과(outcome)를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의 목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이 투입되어 Value for money 측면에서 문제가 작지 않은 수준에서 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함

○ 이에 문체부는 2018년부터 사업의 outcome을 측정할 수 있는 영향지표인 참여자 대상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인식의 변화) 정도를 성과지표로 변경,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환류, 개선에 활용 예정임

– 조사항목 : 문화다양성 인지, 관심의 변화(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도움, 관심정도), 사업 참여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실천(자기 생각과 느낌의

표현기회,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가능성 발견), 다양한 문화 간 소통 및 교류 의지의 변화 등

○ 무지개다리 사업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단년도 지원에서 다년도 지원방식으로 지역 주관기관 선정방식 개선을 요구 받음(2015 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주관기관을 매년 선정하는 대신 계속프로그램 위주의 운영과 각 지역문화재단의 네트워크 워크숍,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 부적절한 이·전용을 방지할 것
- 사업주관기관을 매년 새로 선정하는 방식을 탈피, 단순히 '문화다양성' 자체에 대한 연구나 강연, 협의 등의 1회성 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계속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필요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3년간 다년지원을 고려하여 사업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주관기관 네트워크 워크숍과 기관별 전문가 컨설팅 지속 추진하고 있음

다.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이해 필요

□ 지자체별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차이 발생

○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다양성 가치는 중요하게 판단하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에 차이가 있고 사업의 지향점이 상이함

-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여전히 우리 사회로의 동화(同化) 지향적인 이주민, 다문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무지개다리사업 8년차 주관기관의 경험이 누적되어 시민단체와 협력

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치를 공존을 위한 소통으로서 선도하는 지역사례도 있지만, 문화 없는 다문화라는 비판도 지속 제기

○ 문화다양성 사업은 운영기관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기획력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므로 사업 실행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역점 사업추진 필요

○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보조사업 지원 위주의 사업체계는 사업별 예산에 맞춘 실행에 중점을 두고 문화다양성 정책 메시지의 효과적 전달이 부족해 사회 인식 제고에 한계

□ 장기적 효과를 위한 정책 협치기반 및 성과평가 체계 미흡

○ 또한 기초통계,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제한적이며, 정부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할 기초적 역량과 협력체계 미흡한 실정

○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은 문체부 이외의 여러 소수자와 관계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어 부처간 협업체계가 중요한데 타 기관·부처 등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지 못해 사업효과 확산에 한계

제3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진단

제1절

델파이 조사 설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을 진단하기 위해 사업의 목표와 추진실적을 정리하고,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정책사업 운영에 중요한 가치인 적격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진단하고자 함

- 적격성(Qualification) 진단은 사업이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는가, 용도가 적합한가,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는가, 계획범위 내에서 충분한 기능을 하는가 등을 진단하는 것을 의미함
-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input)과 산출(output)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예산, 인력, 시간 등 투입요소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효과를 산출하였는가를 진단하는 것을 의미함

○ 진단기준이 되는 델파이조사 문항은 국회 등에서 지적한 사업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전문가 회의 의견을 토대로 구성하여, 기존 문제인식에 대한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국회 예·결산 검토 보고서, 보조사업 운용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주요 보호 및 증진사업 평가 결과 자료를 수집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관련 주요 현안 및 문제점을 검토함

○ 델파이 조사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적격성 및 효율성을 진단을 통해 ①사업형태, ②실행체계, ③사업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조사함

○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로 의견을 수렴하고, 2차 델파이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내용을 범주화하였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함

○ 델파이 조사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적격성 및 효율성을 진단을 통해 ①사업형태, ②실행체계, ③사업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조사하였음

○ 1차 델파이조사는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지로 이메일을 활용해 문제인식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선 제안의견 등을 조사하였고, 2차 델파이조사는 1차 결과를 범주화하여 문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음

- 2차 델파이에서는 5점 척도로 동의도 혹은 중요도를 측정하였음(동의 및 중요 정도가 높을수록 5점, 낮을수록 1점에 가까움)

○ 조사대상자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정책자문 및 연구(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수측정 등) 등 학계 12명, 무지개다리사업 등에 컨설팅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현장 및 관계전문가 13명 등 약 25명임

〈표 3-1〉 델파이조사 응답자 구성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정책연구 및 학계	12	48
사업컨설팅 및 현장	13	52

○ 자료분석을 위해 1차 개방형 문항 범주화와를 거쳐 2차 델파이조사 결과값의 Lawshe(1975)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 CVR) 검증에 따라 수치를 해석하였음

- Lawshe(1975)의 CVR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내는데 응답자 수에 따라 최소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CVR 산출 공식과 Lawshe(1975) 이론에 따른 응답자 수에 따른 CVR 최소값은 다음과 같음

$$CVR = (n_e - n/2) / (n/2)$$

* n: 전체 응답 수, n_e: 약간동의(중요) 또는 매우동의(중요) 응답 수

[그림 3-1] content validity ratio(CVR) 산출 공식

〈표 3-2〉 응답자 수에 따른 CVR 최소값

응답자 수	CVR 최소값
5	0.99
6	0.99
7	0.99
8	0.75
9	0.78
10	0.62
11	0.59
12	0.56
13	0.54
14	0.51
15	0.49
20	0.42
25	0.37
31	0.33
35	0.31
40	0.29

*주 : P-Value=0.05
*자료 : Lawshe(1975),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 본 델파이조사의 패널은 25명이나 항목별로 응답 결측치가 있어 응답자 수는 최소 17명에서 25명 사이이며, CVR 최소값은 응답자 15~19명일 경우 0.49, 20~24명일 경우 0.42, 25명일 경우 0.37을 넘으면 내용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음

제2절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1. 사업형태에 대한 평가

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예산 2,513백만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

○ 델파이조사 결과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소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소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추진되고 있는 무지개다리사업, 교육, 정책지원사업(연구, 홍보, 네트워크 등)의 대상과 규모를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더불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의 중요성과 가치를 고려할 때 향후 사업이 확대되고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반면 과대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민간경상보조 방식의 사업구조 상의 예산은 나눠주기식 예산으로 오히려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 사업방향이 모호하여 예산규모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사업의 정의가 불명확하며, 문화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처 내외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 2차 델파이조사에서 예산규모에 대한 찬반의견 이유에 대해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과소하다는 의견과 그 이유에 대해 동의하였음

○ 반면 민간경상보조 방식이기 때문에 과대하다는 의견과 예산규모 판단 어려움에 대한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났음

○ 예산 과소 이유에 대해 ①현재의 교육, 정책지원(연구, 홍보, 네트워크 등) 등 다수의 인식개선 사업 예산 부족(M=4.43, CVR=0.91)의 동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 개선, 후속세대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 노력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

○ 다음으로 ②향후 문화다양성 범위가 국가 전반의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M=4.30, CVR=0.65), ③향후 소액다건보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M=4.00, CVR=0.57) 순으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구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각 사업의 성과가 증폭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 현재의 무지개다리사업 대상과 규모에 비해 예산 부족(M=3.86, CVR=0.36) 의견의 동의도 수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내용타당도가 최소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해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3〉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예산 규모 관련 델파이 결과

항목		n	M	SD	CVR	Accept/Reject
과소	현재의 무지개다리사업 대상과 규모에 비해 예산 부족	22	3.86	0.94	0.36	Reject
	현재의 교육, 정책지원(연구, 홍보, 네트워크 등) 등 다수의 인식개선 사업 예산 부족	23	4.43	0.73	0.91	Accept
	향후 문화다양성 범위가 국가 전반의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23	4.30	0.88	0.65	Accept
	향후 소액다건보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23	4.00	1.04	0.57	Accept

항목		n	M	SD	CVR	Accept/Reject
과대	현재의 민간경상보조 방식의 사업구조 상 예산 과다	20	1.75	0.79	−0.90	Reject
기타	현재의 문화다양성 사업방향이 모호하여 예산규모 판단 어려움	24	2.83	1.56	−0.17	Reject

주 : CVR 최소값 n=20~24일 때 0.42

나.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대표할 수 있는 사업형태

○ 델파이조사 결과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대표할 수 있는 사업형태에 연구조사, 계획수립 및 평가(지표 보강), 지역 간 협력사업, 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확대, 타 부처 협업체계, 인력양성, 국제사회 활동 등이 다양하게 제안되었음

○ 특히 재정사업 뿐만 아니라 평가 및 제도개선과 같은 비재정사업에 대한 의견도 다수 있었으며, 이는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비재정사업 발굴 및 추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2차 델파이조사에서 사업형태에 대한 중요정도를 조사한 결과, 11개 사업형태 중에서 6개가 내용 타당성을 충족하면서 중요하다는 결과를 나타내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형태로 ①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영향평가의 다양성 지표 보강(M=4.44, CVR=0.84)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②대국민 인식조사, 문화다양성 지표측정 및 지수비교 등 연구조사 및 평가(M=4.36, CVR=0.84), ③문체부와 타 부처 간 협력사업 추진(M=4.36, CVR=0.68)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문화다양성 정책 패러다임이 대상별 프로그램 단위에서 부처간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및 조직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등 기반 구축, 생활현장에서의 문화다양성 실천 등 총체적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는 의견

- 또한 문화다양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이기주의의 벽을 없애고, 문화다양성을 중심에 둔 통합적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 다음으로 ④방송, SNS 등 미디어를 통한 인식개선(M=4.24, CVR=0.76), ⑤일반인 대상 교육, 문화소수자와 다수자 간 상호교류(M=4.12, CVR=0.52), ⑥문화다양성 전문 인력 양성과 중간 조직 활성화(M=3.92, CVR=0.52)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일반인 뿐만아니라 예술가에게도 필요하며,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성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

○ 문화다양성, 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패키지) 및 도시 간 협력 지원(M=3.72, CVR=0.28), 무지개다리사업 보완 및 규모 확대(M=3.60, CVR=0.12), 개도국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해외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과 연계 강화(M=3.40, CVR=0.04) 의견의 중요도 수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내용타당도가 최소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해석에서 제외하였음

- 개도국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해외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과 연계 강화 등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영역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 성과가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 권역별 문화다양성 지원 센터 조성 및 유관기관(문화재단, 다문화센터 등) 연계사업 추진(M=3.36, CVR=-0.04),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예술 창작활동 지원(M=3.16, CVR=-0.28)의견의 중요도 수준도 평균 3점을 상회하였으나 내용타당도가 최소 수준보다 낮게 음수(-)를 나타남에 따라 해석에서 제외하였음

- 문화다양성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각 지역의 문화재

단이 다양성 사업을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되 일부 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은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효과적이라는 의견

-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활용한 예술 창작지원도 문화다양성 확보에 의미가 있으나,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문화(예술)에 대한 인정, 차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방점을 두어야 하므로 예술가 지원도 문화다양성 측면에서는 창작지원보다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

〈표 3-4〉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대표할 수 있는 사업형태 관련 델파이 결과

항목	n	M	SD	CVR	Accept/ Reject
정기적인 대국민 인식조사, 문화다양성 지표측정 및 지수비교 등 연구조사 및 평가	25	4.36	0.64	0.84	Accept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영향평가의 다양성 지표 보강으로 모든 사업에 다양성 반영	25	4.44	0.77	0.84	Accept
문화다양성, 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패키지) 및 도시 간 협력 지원	25	3.72	0.98	0.28	Reject
권역별 문화다양성 지원 센터 조성 및 유관기관(문화재단, 다문화센터 등) 연계사업 추진	25	3.36	1.25	−0.04	Reject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소수자와 다수자 간 상호교류 네트워크포럼 등 프로그램 확대	25	4.12	0.88	0.52	Accept
방송, SNS 등 미디어를 통해 문화다양성 사례, 홍보, 이해와 인식개선 등 확대	25	4.24	0.66	0.76	Accept
문체부와 통일부,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등 타 부처와 협력사업 추진(문화다양성위원회 가동 등)	25	4.36	0.86	0.68	Accept
문화다양성 실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중간 조직 활성화 지원	25	3.92	0.64	0.52	Accept
개도국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해외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과 연계 강화	25	3.40	0.96	0.04	Reject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예술 창작활동 지원	25	3.16	1.14	−0.28	Reject
현재의 무지개다리사업을 보완(실행체계, 성과관리 등) 규모 확대	25	3.60	0.82	0.12	Reject

주 : CVR 최소값 n=25일 때 0.37

2. 실행체계에 대한 평가

가. 무지개다리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 현재 무지개다리사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이 비슷하게 나뉘었음(1차 델파이 조사결과 찬성 6명, 반대 8명)

○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무지개다리사업이 지역별 이슈 보다는 소수자 및 소외계층 등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성적인 사업 기획과 지역별 차별화된 진단 역량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현행 문화다양성 정책들이 여전히 다수의 인식과 태도 개선보다는 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각 지역별 문화다양성 이슈를 추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

○ 반대하는 이유로는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문화재단 등)이 계속 사업으로 경험을 누적하는 점, 지역별 활동가의 참여가 낮지 않는 점 등으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었다 판단하고, 주관기관이 지역현황에 맞춰 계획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외에 무지개다리사업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지역별 특성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역별 차별화가 무지개다리사업의 중요한 평가요소라면 기존의 지역문화사업과의 차별화가 부족하는 지적임

– 무지개다리 사업의 취지가 현장에 정확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정책의 목적과 사업의 실제 내용에 괴리가 있어 현장에서는 여타 문화사업과의 차별적 요소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

○ 2차 델파이조사에서 무지개다리사업의 지역별 특성반영 미흡 평가에 대한 찬반의견 이유에 대해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찬성한다는 의견과 그 이유에 대해 동의하였음

○ 그러나 찬성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는 평균 3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내었으나 내용타당도가 충족되지 못하여 해석에서는 제외하였음

○ 반대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동의정도와 기타의견 역시 내용타당도가 충족되지 못하여 해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5〉 무지개다리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관련 델파이 결과

항목		n	M	SD	CVR	Accept/Reject
찬성	지역별 이슈 보다는 소수자 및 소외계층 등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23	3.55	0.91	0.22	Reject
	관성적인 사업 기획, 지역별 차별화 진단 역량이 미흡하다 판단	22	3.68	1.09	0.00	Reject
반대	주관기관이 계속 사업으로 경험을 누적하는 점, 지역별 활동가의 참여가 낮지 않는 점 등으로 지역별 특성 반영 판단	19	3.16	1.01	−0.37	Reject
	주관기관이 지역현황에 맞춰 계획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판단	18	2.78	1.00	−0.56	Reject
기타	지역별 특성 자체가 무지개다리사업에서 중요한 평가요소가 아님(기존의 문화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의 차별화 부족)	17	3.47	1.50	−0.06	Reject

주 : CVR 최소값 n=15~19일 때 0.49, n=20~24일 때 0.42

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관리 방안

○ 델파이조사 결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으로 문화다양성 도시 선정, 지자체 데이터 축척 및 활용 유도, 실행기관 교육 및 인력양성, 무지개다리사업 인센티브 및 성과확산 프로그램, 지역 내 단체 협력지표 성과관리 등이 다양하게 제안되었음

○ 2차 델파이조사에서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중요정도를 조사한 결과 5개로 범주화된 성과관리 방안 중에서 3개가 내용타당성을 충족하면서 중요한 성과관리 방안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었음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관리 방안으로 ① 주관기관(문화재단 등) 내부직원의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및 인력양성, 전문인력풀 관리 등 추진(M=4.28, CVR=0.68)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문화다양성 정책 담당 기관 및 인력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특히 무지개다리사업은 주관기관 관계자의 문화다양성 이해 정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주체 직원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

○ 다음으로 ② 지역 자체적으로 문화다양성 데이터 축척 및 활용 사업 유도(M=4.24, CVR=0.68), ③주관기관과 지역 내 단체와 논의 및 협력정도를 성과관리에 포함(M=3.76, CVR=0.44)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지역 자체적으로 문화다양성 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 또한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재단의 특징은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경험을 통해 성장한 민간단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과 지역 내 단체가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

○ 문화다양성의 도시를 선정, 도시의 변화(사전/사후) 성과 모니터링(M=3.76, CVR=0.36), 무지개다리사업 인센티브 제도 및 성과확산 프로그램 추진(M=3.68, CVR=0.28) 의견의 중요도 수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내용타당도가 최소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해석에서 제외하였음

– 정책의 취지에 맞는 좋은 사례 발굴하여 공유함으로 사업의 기획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고, 문화다양성 도시 선도 모델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 3-6〉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관리 관련 델파이 결과

항목	n	M	SD	CVR	Accept/ Reject
문화다양성의 도시를 선정, 도시 내에 무지개다리 사업 포함 다양한 사업 지원(도시별 약 6억원 규모), 도시의 변화(사전/사후) 및 성과 모니터링	25	3.76	1.09	0.36	Reject
지역 자체적으로 문화다양성 데이터 축척 및 활용 사업 유도(지자체 자체 실태조사에 다양성지표 추가, 지역 인구조사 분석 등)	25	4.24	0.83	0.68	Accept
주관기관(문화재단 등) 내부직원의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및 인력양성, 전문인력풀 관리 등 추진	25	4.28	0.74	0.68	Accept
무지개다리사업 우수 주관기관 인센티브 제도 및 성과확산 프로그램(노하우 공유 등) 추진	25	3.68	0.90	0.28	Reject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관기관과 지역 내 단체와 논의 및 협력정도를 성과관리에 포함	25	3.76	1.20	0.44	Accept

주 : CVR 최소값 n=25일 때 0.37

다. 무지개다리사업 실행체계의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구분 지원

○ 델파이조사 결과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시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을 구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이 비슷하게 나뉘었음(1차 델파이 조사결과 찬성 11명, 반대 10명)

○ 찬성하는 이유로는 광역과 기초의 환경(인구, 면적, 행정 등) 특성에 따라 역할, 성과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 지원, 광역 도와 시단위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반대하는 이유로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영역까지 지원 기회를 확대 필요, 광역과 기초와 무관하게 사업수행 역량에 따른 지원 필요, 전국에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광역과 기초 역할구분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2차 델파이조사에서 무지개다리사업의 광역/기초 구분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 이유에 대해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 찬성에 대한 이유는 모두

내용타당성을 충족하였고, 반대에 대한 이유는 3개 중 1개만 내용타당성을 충족하였음

○ 무지개다리사업 구분지원 관련 반대 이유인 ①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영역까지 지원 기회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 필요(M=4.10, CVR=0.52)의 동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찬성 이유인 ②광역도 단위 재단의 역할설계 필요(M=3.95, CVR=0.70), ③광역과 기초의 환경(포괄 인구, 지역규모, 행정업무 등) 특성에 따라 역할, 성과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 지원 필요(M=3.95, CVR=0.60) 순으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났음

-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이 무지개다리사업 공모 당선을 위해(보조사업) 경합과 경쟁을 하는 구조가 아닌 전략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기초 문화재단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는 실천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 문화재단은 광역단위 문화다양성 이슈 발굴, 조사연구, 인식개선,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수, 네트워킹 등의 업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광역과 기초와 무관하게 사업수행 역량이 우수하고 사업의 적절하다면 지원 필요(M=3.52, CVR=0.05) 의견의 동의도 수준도 평균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내용타당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해석에서 제외하였음

-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의 목표, 역할, 평가기준 등은 구분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인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

○ 더불어 전국 기초지자체에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광역과 기초 역할구분은 부적합(M=3.05, CVR=−0.27)의 내용타당도가 최소 수준보다 낮게 음수(−)를 나타남에 따라 해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3-7〉 무지개다리사업 실행체계의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구분 지원관련 델파이 결과

항목		n	M	SD	CVR	Accept/ Reject
찬성	광역과 기초의 환경(포괄 인구, 지역규모, 행정업무 등) 특성에 따라 역할, 성과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 지원 필요	20	3.95	1.05	0.60	Accept
	광역과 기초의 구분보다 광역도 단위 재단의 역할 설계 필요(현재 광역시단위에서 성과가 많은 편, 광역시와 도의 상황 다름)	20	3.95	1.23	0.70	Accept
반대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영역까지 지원 기회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 필요	21	4.10	1.00	0.52	Accept
	광역과 기초와 무관하게 사업수행 역량이 우수하고 사업의 적절하다면 지원 필요	21	3.52	1.12	0.05	Reject
	전국 기초지자체에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33% 기초지자체만 운영중) 광역과 기초 역할구분은 부적합	22	3.05	1.43	−0.27	Reject

주 : CVR 최소값 n=20~24일 때 0.42

3. 정책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평가

가.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평가 방식 제안

○ 델파이조사 결과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다양성 지표 포함 및 실태조사 지속, 패널조사 및 시계열 성과평가, 정책목표 및 법상 정의 재설정 등이 다양하게 제안되었음

○ 더불어 개별사업 단위에서도 기획 단계부터 성과관리강조 및 다년간 단계적 성과목표치 설정, 사전/사후, 참여자/비참여자 비교분석, 개별사업 전문컨설팅 강화 등이 제안되었음

○ 2차 델파이조사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성과평가 방식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6개 성과평가 방식 중에서 4개가 내용 타당성을 충족하면서 중요하다

는 결과를 나타내었음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①지자체 합동 평가에 다양성 지표 포함, 실태조사 지속 등으로 지자체가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지표를 개발 및 점검하도록 유도(M=4.16, CVR=0.76)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성과평가는 계량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변화 및 발전을 파악하고 장기적 추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의견
- 문화다양성 성과는 사업의 참여자 수, 참여자의 의식변화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충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력 등이므로 지역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 다음으로 ②개방성 정도, 창의력 증진 등을 패널조사, 다년간 시계열 측정으로 성과평가 필요(M=4.04, CVR=0.60), ③개별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강화(M=3.92, CVR=0.68), ④정책목표, 법상 정의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재설정(M=3.84, CVR=0.44)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사업의 속성 자체가 다소 추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표에 의한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직관적 평가와 컨설팅이 중요하다는 의견
- 한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점차 인권문제 전반으로 중심관점이 확대되면서 정책목표, 대상 등을 어느정도 명확하게 하고 정책영역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시점이라는 의견
- 한편 정책목표, 법상 정의 재설정은 전략적 접근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법상 제한된 정의로 인해 제외되는 대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 개별 사업 추진시, 사전/사후 비교, 참여자/비참여자 비교 분석으로 성과평가 (M=3.88, CVR=0.36), 획단계부터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다년간

단계적 성과목표치를 설정(M=3.76, CVR=0.28)의견의 중요도 수준도 평균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내용타당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해석에서 제외하였음

- 사업 시작단계에서 결과물의 종류와 환류방식, 사업 후 평가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을 것을 요청하고 배점을 별도 부여하고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 또한 개별사업의 사전사후 평가, 참여자 비참여자 비교평가가 중요하지만 결과가 가진 미시적 의미에 비해 관리비용, 행정비용이 소모적일 수 있다는 의견

〈표 3-8〉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평가 방식 제안 관련 델파이 결과

	n	M	SD	CVR	Accept/ Reject
지자체 합동평가에 다양성 지표 포함, 실태조사 지속 등으로 지자체가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지표를 개발 및 점검하도록 유도	25	4.16	0.62	0.76	Accept
개방성 정도, 창의력 증진 등을 패널조사, 다년간 시계열 측정으로 성과평가 필요	25	4.04	0.79	0.60	Accept
정책목표, 법상 정의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재설정할 필요(현재는 모든 사람, 모든 사업이 대상)	25	3.84	1.11	0.44	Accept
개별 사업 추진시, 기획단계부터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다년간 단계적 성과목표치를 설정	25	3.76	0.88	0.28	Reject
개별 사업 추진시, 사전/사후 비교, 참여자/비참여자 비교 분석으로 성과평가	25	3.88	0.83	0.36	Reject
개별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강화	25	3.92	0.64	0.68	Accept

주 : CVR 최소값 n=25일 때 0.37

제3절

시사점

○ 이 장에서는 델파이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적격성 및 효율성 관점에서 ①사업형태, ②실행체계, ③사업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정책방향과 목표가 불분명하여 성과 측정 및 평가와 같은 성과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음

○ 문화다양성 관련 법이 마련되어 정책적으로 중요성과 타당성은 인지할 수 있으나, 기본계획 혹은 종합계획과 같은 정책방향과 목표가 부재하여 현재의 정책 예산규모, 적정사업 형태 등에 대해 판단이 어렵다는 것임

○ 다만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의를 고려할 때 현재의 예산규모가 절대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둘째,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사업이나 정책의 결과가 효율적 혹은 능률적인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결과가 당초 의도한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 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화에 대한 추적이 중요하다는 것임

○ 특히 국가차원에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지속하고, 이를 지자체 합동평가, 문화영향평가와 같은 평가에 포함 및 보강하여 활용하여 다양성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는 관련 사업의 참여자 수, 참여자의 의식변화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충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력과 지역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변화라는 것임

○ 개별사업 단위에서의 성과관리 방안으로도 사전/사후 변화, 참여자/비참여자 비교 등 대상 혹은 지표를 추적하여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임

○ 셋째, 문화다양성 사업은 사회 분위기 개선, 후속세대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 노력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다양성 교육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고 있음

○ 특정 대상인을 위한 교육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방송, SNS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 등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교육과 인식개선 관련 예산이 과소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적 인식개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여전히 대상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 넷째, 무지개다리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진단과 주체가 제시되었으나 방향성이 좁혀지지 못하였고, CVR값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패널들 간의 의견 조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시점에서 공통적인 문제인식과 해결대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패널 간에 무지개다리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여도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다만,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의 인력관리 및 교육 등 내부 역량관리와 주관기관과 지역 내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사업성과에 중요다는 점에는 상당수 패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4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절

문화다양성 중점 사업별 보완 방안

1.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사업 보완

가. 무지개다리사업 지원방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예산 87.5%가 무지개다리사업에 배분되는 만큼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다양성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음

– 2019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예산 2,513백만원 중 87.5%(2,200백만원)가 내역사업인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무지개다리사업, 아카이브)에 해당

○ 무지개다리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지역 문화재단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26개 주관기관(문화재단 등 지역의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이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 사업선정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5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1차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2차 PT 발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최소 4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심사위원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을 책정하고 있어 심사위원의 지원금액 결정 재량 폭이 넓음

○ 사업내용은 다양성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인해 실행조직(문화재단)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문화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함

- 소수자-다수자의 공연 및 전시,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는 생활문화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소수자-다수자 교류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지원사업과 유사할 수 있음
-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대부분의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는 공공재정 의존도가 높음) 의해 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문화사업을 다양성사업으로 컨셉화 할 우려

〈표 4-1〉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사례

- (소수자-다수자 간 문화공감대 형성) 한가지약속 캠페인, 난민영화제, 문화다양성 연극제 등을 통한 다수자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다양한 문화주체 간 공감대 형성
- (매개인력 발굴 및 양성) 문화다양성 시민학교 운영, 문화다양성 발굴단, 교육 강사 캠프 등을 통해 지역 내 매개인력 발굴 및 양성
- (소수자 문화표현기회 확대) 장애인, 중도 입국 청소년, 고려인, 북한이탈주민 등 문화적 소외계층 발굴 및 예술가와의 1:1 매칭 작품활동, 팟캐스트 운영, 음악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소수자 문화표현 기회 확대
- (지역 정책기반 형성) 지역 내 문화다양성 정책토론회 개최, 협의체 구성,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및 지자체 조례 제정에 기여(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충북, 구로, 익산 등 전국 10개 지역, '18년 기준)
- (협력체계 구축) 찾아가는 간담회, 문화다양성 마을 운영,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등으로 다양한 문화주체 간 상호이해도 제고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안내

○ 무지개다리사업의 주관기관 지원 예산은 2019년 17억4천만원으로 26개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최초 지원당시 22.7억원, 관련 법이 제정된 다음해 2015년 24.3억원에서 지원예산은 감소 추세

〈표 4-2〉 무지개다리사업 운영 변화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최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주관	문체부	교육진흥원	예술위	예술위	예술위	예술위	예술위	예술위
예산	시범사업	22.7억원	23.9억원	24.3억원	21.0억원	19.9억원	21.3억원	17.4억원
참여기관	6개	12개	17개	23개	24개	25개	27개	26개

○ 또한 소규모 보조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는 후순위이지만 많은 자원과 시간, 인력, 새로운 네트워크 노력 등을 요구받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

– 지역당 4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의 소액다건형 지원 형태로 인해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한편 2012년부터 현재까지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에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2) 개선방향

□ 사업지원 유형화 및 유형별 예산 차등지원

○ 현재 무지개다리사업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 심사위원의 심의 의결로 선정되며 지원금액도 배분기준 없이 최소와 최대 기준을 두고 심의위원회 전체 논의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해 문화다양성 확산에 기여할 역량 있는 광역·기초 문화재단 및 공공문화기관 27개 내외 선정, 1개 기관 당 최소 4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자부담금 10% 적용, 심의위원회 전체 논의에 따라 주관기관별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을 결정

○ 그러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지표와 예산배분 기준 없이 심사

위원의 현장 논의에 의한 지원금액 결정은 사업특성이나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사업계획, 지역의지, 사업성숙(운영 누적경험) 수준에 따라 예산지원 유형을 A~C 3단계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주관기관 예산을 3단계로 차등화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원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사업계획 70%, 지역의지 20%, 사업성숙 10%를 종합한 결과로 사업계획 우수하고 지역의 노력과 의지가 높으며, 사업운영 경험 기간이 길수록 많은 예산을 배정함

- 사업계획 평가는 무지개다리사업 공모 심의기준에 따라 타당성, 적합성, 차별성, 운영역량 등의 영역에 대한 검토
- 지자체 정책에 문화다양성 관점을 부여하고(조례제정 등) 지역 내 집단간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와 관련한 지역 현황 분석과 이행계획이 마련된 경우 집중 예산을 배정
- 지자체 혹은 사업주관기관은 지역의 관련 플랫폼을 기반으로 문화다양성을 전략 협업 사업으로 디자인하고, 중앙정부는 사업추진 준비가 적절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예산을 배정
- 노하우가 누적된 지역의 사업주관기관이 등장하는 점을 기회로 삼고, 선도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의 모델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업간, 지역간 연계사업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부여

〈표 4-3〉 주관기관 유형별 지원예산 규모 기준(안)

구분	A	B	C
주관기관 지원예산	1억 원	7천만원	5천만원

주 1) 평가기준 : 사업계획 70%, 지역의지 20%, 사업성숙 10%
2) 사업간, 지역간 연계사업의 경우 가산점 10점을 부여

□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자체 책임 강화

○ 재정지원 체계는 재정 전달체계 및 사업 주체, 수혜자 범위에 있어서 책임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사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정책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유형과 특성에 맞게 재정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제정 등 지역의 문화다양성 정책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은 지역별 이슈와 문화적 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인 사업추진 필요

○ 따라서 현재 무지개다리사업의 재정지원 방식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경상보조로 변경하고 국비-지방비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안을 제안함

- 전문가 조사에서 무지개다리사업은 중기적 관점에서 중앙정부 보조사업이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 제시
- 그러나 문화다양성 정책이 의미하는 국가차원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고려할 때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체계 조정이 바람직할 것임

○ 매칭비율은 국비지원 금액 규모의 1대1 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하며, 점차 지방비 매칭비율을 줄여 지자체 책임을 점진적으로 강화시킴

○ 선정절차는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지침을 시달하면 지자체에서 신청서의 예산 등을 검토(신청서는 문화재단 등 주관기관 작성) 후 부처에 제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및 통보함

- 광역자치단체가 소관 기초자치단체의 지자체는 신청서까지 일괄 취합하여 재정여력 및 자체점검 후 부처에 제출

□ 평가계획 및 평가지표의 사전 제시로 사업성과의 효율화 유도

○ 사업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평가체계의 확립이 필요한데, 평가계획이나 평가지표가 사업 수행기관(주관기관) 선정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함

○ 현재는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선정 이후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는 사전에 공유되지 않고 컨설팅 과정에서 개발 및 수정하고 있음

○ 사업의 성과는 사업 수행주체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나타나므로 수행주체가 사업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표를 사전에 제시해야 함

○ 성과지표는 정책이 의도하는 바를 따르면서 실행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2017년 다년지원 도입과 맞물려 단계별 목표설정이 중요함

- 무지개다리사업은 2017년부터 사업지원 기간을 3년간 다년지원 체제로 개편하여 주관기관의 사업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사업 공모에 응모시 3년간 중장기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다만 성과관리 측면에서 다년지원의 의도는 예산에 대한 안전성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닌, 문화다양성 사업의 성과가 변화에 대한 추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년간 사업 이력관리 및 단계적 사업정착에 방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주관기관이 중장기적 전략과 성과관리 관점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다년간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 더불어 사업평가의 취지와 진행방식에 대해서도 사업수행기관 관계자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평가 수용도를 높일 필요

- 사업평가의 목적 및 주요 지표, 절차와 과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활동,

평가 일정,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전 설명회 개최

○ 평가체계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사업수행, 사업평가의 각 단계별로 수행주체 자체점검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컨설팅 및 평가의 체계적인 운영의 사업의 질적 개선 도모

○ 문화다양성 사업은 변화에 대한 추적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과 평가를 결합한 방식이 적합함

○ 실적보고서와 단편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방법과 다르게 기획단계부터 최종 평가단계가지 전 과정에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평가자료를 축척하고, 자문으로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임

○ 무지개다리사업은 2012년부터 매년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컨설팅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회성 자문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컨설팅 및 평가위원이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컨설팅과 평가를 결합한 평가방식으로 사업의 선정과정에서부터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평가단을 통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컨설팅과 평가를 실시함

– 사업선정과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선정부터 실행까지 다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그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면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 선정과 컨설팅 및 평가 활동을 동일한 위원회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때 평가위원 간에 사전 워크샵으로 사업선정 및 평가 기준과 방침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그리고 평가위원과 수행기관 간에 공감대 형성은 평가의 혼란을 저감시켜주는데 중요함

○ 평가 결과의 활용은 평가가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추후 사업에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조치가 중요하며, 우수

한 사업에는 포상하되 미진한 사업을 축소 및 조정하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함

○ 이러한 컨설팅 및 평가시스템은 사업초기에서부터 평가단이 구성되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과 자문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에서부터 중간점검, 현장컨설팅, 최종결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자가 평가대상을 전담하는게 특징적임

- 전문가 조사에서도 실효성있는 컨설팅 및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수행기관과 매칭하여 사업초기부터 결과까지 지속적인 컨설팅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 사업 선정단계부터 결과까지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일관성 있고 전문성있는 조언으로 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평가운영에 고비용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단 구성이 어려운 단점도 있음

나.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1) 현황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는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한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를 축척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터넷(www.cda.or.kr)으로 문화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운영주체는 2015년 국립예술자료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 변경, 현재 문화다양성 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결과물과 연계한 자료를 축척하고 있음

○ 안정화된 시스템과 체제하에서 원천 자료를 지속 수집 및 보존하여 자료 업데이트율을 높이고 동시에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에 주력하여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 현재 문화다양성 관련 컨텐츠의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아카이브 축척 자료는 문화예술

위원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증진 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 교육사업, 주간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음
- 내용적으로는 문화다양성 관련 예술(다원문화예술, 커뮤니티, 다국적 문화), 행사(문화예술제, 문화예술교육, 일상예술), 기획(이주민영화, 디아스포라) 관련 사업결과물 자료가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여러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의 활용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영역을 넘어 다양한 유관조직의 문화다양성 사업 자료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필요

○ 아카이브 서비스는 기록 보유중심에서 이용자 활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 아카이브도 이용자(일반국민 영역, 행정영역)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함

○ 아카이브 이용 측면에서 행정영역은 업무 수행의 내용을 정보화하여 업무지식을 전수·공유하기 위해 필요하고, 일반 국민영역은 문화다양성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국가 전체의 사업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함

○ 그러나 현재의 문화다양성 아카이브의 자료축척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보조사업 관계자의 참고자료 활용에 머무르고 있음

○ 문화다양성 관련 정보 서비스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카이브 체계를 마련할 필요

2) 개선방향

□ 범부처 차원의 문화다양성 자료 협조 및 연계

○ 문화다양성아카이브(Cultural Diversity Archive)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자

원을 축적하고 유통하는 채널로 마련되었음

○ 국내에서 문화다양성 사업 다양한 주체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자료 축적 및 활용을 위해서는 자료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문화다양성 지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

○ 범국가 차원의 문화다양성 자료 수집과 보존의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자료 단위를 결정하고 관련기관과의 자료 협조 및 연계작업이 필요

○ 이를 위해 우선 문화다양성 정책공급 현황과 이용자(일반이용자, 유관기관 관계자, 행정이용자)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다양성 중요 영역, 통합 및 연계방안을 설계함

– 문화다양성 사업 범위가 방대하고 컨텐츠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분류체계를 정확히 하고 이용 수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

○ 또한 원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와 Linked data를 제공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공개범위 및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기관간 협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카이브 수집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임

○ 더불어 시스템의 자료수집, 관리 및 연계, 정보공개 및 활용 등의 범위확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인력, 조직에 있어서도 확대 정비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다양성 관련 추진사업 결과물 수집·공유

○ 문화다양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사업과 결과물(자료, 콘텐츠) 및 홍보물, 뉴스자료, 이주민 영화 등 자료 수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의 결과물 데이터를 축척하고 있고, 특히 문화관련 아카이빙 시스템을 다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간 자료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이 있음

– 한국예술위원회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해외예술정보DB, 인문

360도, 미술주간, 공공미술프로젝트, 예술기록아카이브 등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다만 문화다양성의 포괄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카이빙 범위와 수집 전략 관련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 최근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시스템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통합센터(IDC)로 서버를 이전함에 따라 동 서버를 이용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의 자료 연계가 가능해짐

– 문화정보통합센터(IDC)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360도 서버와 협업하여 서버 간 콘텐츠를 연계

○ 아카이브 시스템의 활용 측면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 중 하나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시스템에 접목시켜 수강신청, 강의시청, 수료 등 학사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음

– 행정영역에서의 효용으로 2017부터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관리를 아카이브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

2.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보완

가.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확대

1) 현황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는 2016년부터 문체부와 교육부가 지정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학교 내 문화다양성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4개의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음

○ 또한 2017년 문화다양성 온라인 프로그램(3H)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화다양성의 이슈, 문화다양성 관련 인식과 태도, 일상 속의 문화다양성 실천을 위한 정책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문화다양성 인식확산과 교육 강화에 적극 투자가 필요

-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현재의 교육, 정책지원(연구, 홍보, 네트워크 등) 등 다수의 인식개선 사업 예산 부족(M=4.43, CVR=0.91)의 동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 개선, 후속세대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 노력 등이 중요하다는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

○ 그간 소수자에 대한 정착교육에서 일반인 다수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범위가 확대되어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학생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과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혼돈 발생

2) 개선방향

○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중심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정책을 현장에서 차별화 되도록 세밀한 사업설계가 필요

○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조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진단 및 개선하고,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보다 확대된 형태의 커리큘럼 개발 필요

○ 온라인 프로그램(3H)을 활용하여 초중등 교사를 대상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추후 학부모교육까지 인식개선 학습이 진행되어야 함

○ 교육자료는 참여자 눈높이에 맞는 구성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놀이교육이 효과적이겠지만 청소년들이나 성인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효과적임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4개 운영은 제한적으로 지정되어 문화다양성 교육의 선도적 혹은 거점으로 육성하기에 무리가 있어, 향후 교육부와 협업하여 연구학교 지정을 늘릴 필요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UNESCO ASPnet,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1953년 15개국 33개 학교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1개국 1만여개의 학교와 교육기관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한국의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는 1961년 중등학교 4개교가 가입한 이래 2019년 현재 621개교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세계시민교육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나.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담당자 교육 강화

1) 현황

○ 2015년부터 지역의 다양한 소수문화 구성원과 문화예술행정 인력(공무원, 재단임직원 등), 실행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현장 밀착형 맞춤 교육 추진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인식 연수 프로그램과 공유 및 확산 프로그램으로 대상의 요구에 맞춘 문화다양성 인식(기초), 공유 및 확산(심화) 프로그램으로 개발 및 구분 운영하고 있음

- 인식 기본 프로그램 : 생활관습에 따른 상대에 대한 정보 없이 편견 고착화된 각 개인에 대한 자기환기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접근 제시
- 과거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 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공유

및 확산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를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 양성, 공무원, 공공기관 등 연수를 확대 등 추진할 필요

○ 현행 교육은 부처 및 업무, 지자체 및 지역과 구분없이 감수성 향상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업무별 세분화될 필요

-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지만 문화다양성 정책 수행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 사실의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다양성 패러다임 전환의 가치와 목표, 내용에 대해 모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

2) 개선방향

○ 문화다양성 정책은 특정 부처 및 지자체나 특정 부서에 한정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정책을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 및 지자체, 실행기관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과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 실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중간 조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관리 방안으로 ① 주관기관(문화재단 등) 내부직원의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및 인력양성, 전문인력풀 관리 등 추진(M=4.28, CVR=0.68)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문화다양성 정책 담당 기관 및 인력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특히 무지개다리사업은 주관기관 관계자의 문화다양성 이해 정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주체 직원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

○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성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인식확산 교육과 지자체 행정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모두 지자체 담당자들의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바 문화다양성 개념, 범주, 지원사업 등 공통된 합의를 위해 지침서 및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교육프로그램은 이론적, 관람형 프로그램을 벗어나 경험을 통해 감정적으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수행 담당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임

3.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사업 보완

가.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운영 성과공유 강화

1) 현황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2002년 UN총회에서 지정한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을 포함하여 1주일간 기념 문화행사 추진 등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지원 운영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 됨

○ 전시, 공연, 포럼행사, 캠페인 등을 운영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담론을 구체화하고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여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인식 확산시킴

– 포럼행사 개최, 백서 발간 및 배포, SNS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 지역문화 공공기간과 협업을 통해 행사 추진

○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에서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5개 지역문화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음

○ 또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막식 개최도시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5년, 청주문화산업단지, 2016년 서울 대학로, 2017년 부산 광복로(공모)에서

개막식을 개최하였음

○ 2018년에는 지방선거(2018.6.13.) 등으로 인해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막식 공모에 대한 지자체 참여가 없어 개막식 개최도시가 지정되지 않았음

2) 개선방향

□ 문체부-지자체 협업으로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전국 확산

○ 문화다양성의 날은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다양한 문화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나, 전국적으로 행사가 확산되지 못하고 무지개다리사업 지역에 국한되어 추진되는 한계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실효적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전국단위에서 행사를 기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 및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에 지자체 참여 유도를 위해 문체부-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협력과 기존 지자체 문화다양성 관련 행사와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음

○ 협의체 구성 또는 기존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전국 24개 도시가 참여하는 협의회로서 문화적 다양성 사회를 지향하면서 지자체간 다문화 관련 제반사항 협의,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등의 기능수행

○ 또는 지자체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관련 행사·축제를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과 연계하여 문화다양성의 날에 대한 인식 확대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과가족 등의 소수자 관련 기념행사를 다수 개최하고 있으므로, 다양성 정책과 관련된 행사를 추진할 때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명칭을 사용하도록 협업 논의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및 홍보·캠페인 강화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최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되 개막식 개최도시는 문화다양성 도시로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축제, 행사, 전시, 포럼 등을 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포럼행사는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이나 확산을 위한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학술행사와 함께, 우리 사회와 구체적인 지역과 정주지에서 겪는 현실 속에서의 문화소수자와의 관계나 경험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이 사회의 자원이 되고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적 풍요를 보장해주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현장의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문화다양성 관련 영상, 웹툰, 음악 등 콘텐츠 제작과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를 통한 홍보·캠페인은 확대 필요

-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사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표현의 사례 및 존중과 이해 사례(차별 개선 사례), 소수문화에 대한 왜곡된 사례 등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
- 문화다양성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한 영상, 웹툰, 음악 등 문화콘텐츠를 공모전 추진, 영상 발굴 및 제작은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현장에 기초한 시각으로 사례를 발굴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방송, SNS 등 미디어를 통한 인식개선(M=4.24, CVR=0.76)이 사업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또한 문화다양성 관련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에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활동에 대한 노력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필요

-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데 공헌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위한 법제 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나. 문화다양성 지표 확정 및 추세분석 실시

1) 현황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은 사회분위기 변화와 인식개선이 주요한 정책 결과로, 성과가 나타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이상적인 목표치보다는 변화하는 방향성이 중요한 영역임

○ 따라서 다년간에 걸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축척 및 분석하여 성과관리 하는 중장기적 성과관리 체제를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도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 창출에 대국민 인식조사, 문화다양성 지표측정 및 지수비교 등 연구조사 및 평가(M=4.36, CVR=0.84)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현재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의 성과평가는 개별사업의 실행지표에 관련되어있어 실제 정책단위의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성과점검을 위한 지표 개발은 2013년 시범지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문화다양성 지표를 개발 및 측정하고 실태조사, 시범평가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각 연구에서 지표를 수정하여 단년 진단에 그치고 시계열 비교는 불가한 실정

- 2013년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018년 「2018 문화다양성 정책지표개발 및 시범평가」에서 지표 수정

〈표 4-4〉 문화다양성 측정지표 개발연구 현황

연구명	주요 지표구성
2013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지표영역은 사회문화, 문화정체성, 문화예술로 구분되며, 각 지표영역은 환경, 제도, 인식 등 세 가지 관점을 교차하여 평가(107개 시범 지표) – 사회문화영역(19개): 국적(6), 권역(4), 종교(4), 언어(5)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 – 문화정체성영역(46개): 여성(9), 성소수자(9), 장애(8), 유아아동(6), 청소년(7), 노인(7) 등 총 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 문화예술영역(42개): 독립문화예술(20), 다원문화예술(6), 커뮤니티문화예술(8), 다국적문화예술(8) 등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지표영역은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향유활동, 창조활동), 인식지표로 대분류하고, 각 대분류 하부에 중분류(세부지표) 구분을 적용. 소수자를 11개 집단으로 조사대상 설정 – 정책지표: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등 3개 중분류 – 여건지표: 기반시설여건, 자원여건, 지원인력여건 등 3개 중분류 – 활동지표: 참여도, 친밀도, 만족도, 포용도, 평등도 등 5개 중분류 – 인식지표: 친밀도, 수용도, 필요도, 포용도, 평등도 등 5개 중분류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대국민 인식조사와 사회적 소수자 집단 인식분석을 구분하여 추진 – 대국민 인식조사는 6개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 소수문화현상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인지도,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필요도 등 5개의 세부지표 구성 – 소수자 집단 인식분석은 문화다양성 대표 3그룹인 외국인이주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함. 6개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 소수문화현상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지도,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필요도 등 5개의 세부지표 구성
2018년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지표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지표영역은 대분류 6개, 중분류 14개, 세부조사항목 15개로 구성 – 정책수립(2) : 정책연구, 의견수렴 – 정책집행(4) : 관련제도, 전담인력, 정책재원, 정책홍보 – 정책내용(2) : 정책사업, 담당자 교육 – 정책인식(2) : 주민대상조사, 문화소수자 대상 조사 – 정책여건(2) : 기반시설 여건, 활동여건 – 정책효과(2) : 지속가능성, 환류가능성

자료 : 한국예술종합학교(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이동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지표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류정아).

2) 개선방향

○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 전반의 소수자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제고와 같은 추상적 성과 영역이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 및 발전을 파악하고 장기적 추세 변화 파악이 중요

○ 통계자료 구축은 수요자 중심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인식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나 현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지표측정 관련한 조사자료는 항목별로 불규칙한 자료로 조사됨

○ 따라서 현재까지 수정 개발된 문화다양성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과 성관관리 체제 안착이 필요

○ 문화다양성은 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 관점이 투영되도록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복지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 전반에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분위기 형성이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지표를 확정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수용 수준, 국민과 지자체 정책의 다양성에 대한 변화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차원의 성과와 개선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궁극적으로는 성인지조사와 같이 문화다양성 지표가 각종 정책 요소들을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잡아야 함

제2절

문화다양성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1. 문화다양성 정책체계, 정책방향 등의 재정립

1) 현황

○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문화다양성 정책은 국내의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국민적 체감 및 인식, 문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나 혐오문화의 확산 방지와 집단간 이해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탈북, 이주노동, 난민, 국제결혼 등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다양성 정책 종합계획이 부재하여 문화다양성이 이주여성 혹은 소수문화로 단편적, 제한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실정

○ 이렇다보니 소수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될 때 마다 각 부처에서 제각기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별 정책이 서로 중복되거나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추진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 다양한 소수의 등장과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문화다양성 정책이 중요해지고 사업수는 늘어났지만 명확한 역할구분 없이 부처별 사업 추진되어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은 미흡한 실정

–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타 부처에서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기준 193개 사업 409,576백만원 규모로 파악됨

〈표 4-5〉 2017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처 명	문화다양성 사업예산	부처 총예산	부처 총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사업예산
문화체육관광부	363,968	5,697,103	6.39
고용노동부	504	18,261,428	0.003
교육부	4,133	61,631,650	0.007
국방부	200	40,334,700	0.0005
농림축산식품부	500	14,422,000	0.003
법무부	335	3,337,774	0.01
보건복지부	348	57,662,800	0.0006
방송통신위원회	36,950	239,300	15.44
여성가족부	348	728,470	0.05
외교부	793	2,224,000	0.04
행정안전부	1,497	41,483,217	0.04
계	409,576	246,022,442	0.1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문화다양성 정책연차보고서 재구성

주 1) 표에 제시된 사업 수 및 예산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 추진된 사업 수는 다를 수 있음

2) 문체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정책사업 중 문체부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있으므로 중복집계 될 수 있음

3) 예산규모는 각 부처의 재정공시를 참고하여 작성됨

○ 즉 문화다양성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지자체, 실행기관에 의해 추진(집행)되고 있으나 정책 방향성 설계 및 정책조정기능 미흡 등으로 정책 추진에 따른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UN에 의한 한국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에 관한 권고는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이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나 사업에 관한 개선을 넘어 범정부적인 차원의 협력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정책 수립이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정책 중장기 기본계획과 함께 문화다양성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바람직한 모니터링과 환류시스템, 성과지표 등은 모두 정책의 목표에 따라 설정되는 것인데 이를 나타내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실정으로 한계에 노정
-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M=4.44, CVR=0.84)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총괄부처와 실행부처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포함한 법정 기본계획 수립[2]이 중요함

2) 개선방향

○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나타내는 기본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으로 문화다양성 정책목표 수립과 구체적 사업방식, 성과관리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설계될 필요

- 한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점차 인권문제 전반으로 중심관점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목표,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정책영역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시점이라는 의견
-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사업의 정의가 불명확하며, 문화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처 내외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

○ 현재 각 부처별로 대상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면(2018)의 연구에서 파악한 주요부처 문화다양성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교육부는 교과 집필진,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확산사업,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등을 추진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국민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청소년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보건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법무부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이민정책 이해과정 등을 추진
- 행정안전부는 이북5도위원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사회활동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정서과정, 이북전통문화 계승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 정책 사업을 추진

○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행사업 단위에서 중복성을 검토하고 부처의 역할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영역 구분이 필요함

- 전문가 조사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이 각 부처에서 대상별 프로그램 중심에서 부처간 협력을 통해 총체적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

○ 문화다양성은 기본계획은 범정부적 종합계획으로 다문화가족정책 혹은 외국인정책 등 타 부처의 역할과 차별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목표,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설계가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대상별 정책이 아닌 수용성 제고, 다양성 인식 확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와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 영역이 구상되어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제고

1) 현황

○ 프로그램 예산제도 내에서 예산서는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단위, 이를 수행할 조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전략이자 성과관리 체계를 나타내고 있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예산은 내역사업 단위에서 편성되고 있고 부처 내 전담조직 없이 담당자 1–2인의 업무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추진 동력이 미흡한 실정

〈표 4–6〉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구조 현황

년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19	창의적 문화행정구현	문화·인문진흥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2018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정책지원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2015~ 2017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정책지원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 남북 문화 상호이해 제고
2014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정책지원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 – 이주배경 청소년 문화감수성 증진 사업
2013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정책지원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
2012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 다문화 공연·전시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 자녀 문화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종사자 대상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 문화 간 상호이해 증진 정책 개발

2) 개선방향

○ 사업예산 심의 및 평가 단위는 세부사업 단위로 문화다양성 보호 미 증진 사업의 성과관리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내역사업 단위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추후 법에 의해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목표설정과 과제를 전담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함

○ 과거 2007년~2008년 기간동안에는 다문화정책팀을 전담조직으로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기도 하였음

- 「외국인근로자 문화적 지원 과제탑승팀」 운영(2005. 3~9월)
- 「다문화사회 대비 문화적 지원 TF팀」 운영(2006. 5~10월)
-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신설(2007.11월~'08)
- 다문화정책팀을 여가정책팀으로 변경(2009년)

○ 현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예산편성 체계가 프로그램 예산체계 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세부사업 수준에서의 예산배분 및 조정이 적합할 것임

현재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창의적 문화행정 구현	문화·인문 진흥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변경(안)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창의적 문화행정 구현	문화정책 지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그림 4-1]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체계 개편 안

3. 유네스코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1) 현황

○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주체의 소통과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유네스코 협약에서 의미하는 다양한 예술적 표현, 문화산업 보호 등에 대한 초점은 부족한 실정

○ 문화다양성 정책은 UNESCO가 제정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국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고려할 필요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문화의 일국 독점을 막고 제3세계 국가들의 언어·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문화상품에 대해서는 경제적·문화적 이중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채택
- 즉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 상품의 완전한 개방에 '문화적 예외'를 국제적으로 합의하는 개념임

○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행할 책무가 있음

- 제6차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2017. 6. 12.~15. 파리 유네스코본부) 중 시행된 2017~21년 임기의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회 선거에서 위원국으로 선출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은 145개국이며 이 중 위원회는 24개국으로 위원국들은 대륙별로 6개 그룹으로 활동함

2) 개선방안

□ 유네스코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연계·확대

○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법은 유네스코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문화다양성 법률 제1조), 유네스코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이 필요

○ 문화다양성협약은 기본적으로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경제적·문화적 이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유네스코는 2017년 6월에 협약당사국 총회[3]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새로운 실행지침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집행에 관한 운영지침[4]'을 채택함[5]

- 운영지침은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서 문화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균형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창작, 배포 및 접근, 그리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및 기타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디지털 환경,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창조, 생산, 유통, 전파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사업영역에 대한 발굴 및 사업 확대가 필요함

- 문화적 내용의 창조, 생산, 유통, 전파에 대한 기술적 변화의 영향력은 매우 크므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수단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잘 적응되도록 설계해야 함

○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 5G 시대를 상용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서 디지털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3) 협약당사국 총회는 모든 협약 가입국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로, 협약 관련 전체회의이자 최고기구이며, 매 2년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 협약 이행과 적용을 위해 정부간위원회가 준비한 운영지침을 승인하며, 협약관련 취해진 조치에 대해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함

4) 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5) 2018년 12월 제12차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이행 로드맵'을 채택

선제적 역할을 할 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이자으로서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문화전문가와 문화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에의 접근성 보장, 디지털 문해,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사업을 확대할 필요

– 디지털 기술 변화는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새로운 로직들을 등장하게 하고, 문화적 표현들의 다양성을 촉진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관련 사업(예시)

–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창작 형태를 지원
–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예술가와 전문가 지원 확대
–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증대
– 지식재산권의 존중 및 보호, 디지털환경에서의 창작품 가치 인정
– 문화창조산업을 위한 재정확보 및 민관 새로운 유형의 협력 장려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이 배포 기회를 지원
– 신흥 지역 디지털 시장의 발전을 촉진
– 개발도상국에서 문화 제품 및 서비스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독려
– 저작권 조약 체결, 불법 복제 방지 조치 등 온라인 유통 법 체계
– 다양한 문화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접근을 보장
– 문화적 표현 관련 온라인 접근을 제공하도록 공공문화기관을 독려
–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조치의 독려

○ 위의 사업예시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문화다양성 주무부서 외에도 여러 부서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협업이 필요함

○ 부처 내 연계협업을 위해서는 예시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연계협력 가능성을 진단하고,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에 배치하여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정부간 위원국으로서 문화다양성 사업영역 발굴

○ 한국은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선출되었고, 2021년 6월까지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적용과 이행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강조됨

-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총회(2017.6월)에서 아태지역 정부간 위원국[6]으로 선출(임기 2017~2021)
- 제12차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협약 정부간위원회 총회(2018.12월)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

○ 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위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과 교류 확대, 개발도상국에 지원 등 문화외교 역량을 갖추고 관련 사업영역을 발굴·확대할 필요

○ 국제포럼 및 국제행사를 연례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위원국 간 국제 콜로키움 시리즈 추진, 개도국 문화ODA 지원 확대 등 문화다양성 정책 선도국가로서 영향력 강화 필요

- 2019년 4월 개최된 문화다양성 국제 포럼 및 국제행사를 통해 핵심의제를 공유하고 국내 현황을 진단, 매년 국내외 문화다양성 관련 문제(이슈)를 논의할 필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기관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문화다양성 포럼 및 전시 추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국제 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19.4.18.(목) 오후 1:30~ / 국립현대미술관
- 목 적 :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 위원국으로서 국제적 역할 강화 및 유네스코 발간 '2018 국제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홍보
- 주요내용 : 국제보고서 주요내용 발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와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론

6) 정부간 위원국 : 24개국, 임기 4년, 매년 1회 이상 위원국 회의 개최/ 6개 그룹 중 아시아태평양그룹 위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의 개별 사업단위를 진단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음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첫째,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예산 영역의 사업만을 분석하였으나, 문화다양성 정책의 포괄 영역은 보다 넓음

– 제2차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에서 정리한 문화다양성 사업은 도시의 문화산업 및 표현의 다양성 지원, 문화간 교류 및 소통, 이주와 통합, 장애인 문화접근성 강화, 소외된 문화 예술 지원, 미디어 다양성, 예술교육, 성평등, 노인의 문화적 표현 등 문화정책과 국제문화협력,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보다 광범위함

○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업단위는 목표설정이 미비하거나 예산 자체가 적은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달성도, 효과성 및 효율성을 산정하거나 성과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전문가 델파이조사로 문화다양성 정책자문 및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 문화다양성 사업이 가진 현황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주관적 분석에 제한점이 있음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목표, 사업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 효과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성과관리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서 연구에 의미가 있었으며, 향후 누적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추후에는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다양성 사업이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어떠한지, 변화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자료를(지표) 분석, 축척,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척할 필요

○ 셋째,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단기간 내에 실천할 수 있는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다보니, 제도개선 제안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문화다양성 사업은 재정투입 사업보다 비재정투입 사업으로 다양성 사업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제도적 장치는 보다 세밀한 진단과 역할관계, 실현가능성 분석이 필요함

-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은 유네스코 협약을 이행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데 유네스코 협약은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은 범국가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

○ 추후에는 비재정투입 정책 요인들, 예를 들어 법·제도 개선,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설계와 이를 토대로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확산을 위한 시사점 도출과 같은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 「2015회계연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재정부(2018), 「2018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기획재정부(2015),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김면(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디자인자리(2018), 「2018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 평가 연구」, 나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구책임 : 최혜자).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새문화정책추진단(2019), 「문화비전 2030」,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201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전략수립 방안 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조옥라).

한국예술종합학교(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이동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2017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지표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2016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 류정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안내」

Lawshe, C. H.(1975), A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UNESCO(2018), *2005 Convention Global Report: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UNESCO(2017). *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UNESCO(2009), *PBC, Diversity and Performance Report.*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arko.or.kr)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시스템(www.cda.or.kr)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Boram Jeong

South Korea's cultural diversity policy was promoted in 2014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addition since 2017 It has been elected as a member of the UNESCO's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Cultural Diversity and has been given more responsibilit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present, the government emphasizes securing cultural diversity as a national task, and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s emphasized throughout the national policy, including setting diversity as one of the three directions in the 'Culture Vision 2030'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Rainbow Bridge Project', the main cultural diversity proje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accumulating project experience for the 8th year of this year. And local governments have shown achievements in the expansion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such as the enactment of cultural diversity regulations and budgeting. However,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project promotion method and effectiveness from the external point of view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elated budget is in a trend of reduction even though the legitimacy of the policy project is secured due to the legis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and Promotion projects and to search for ways to improve cultural diversity. In particular, we sought to develop not only the evaluation of individual projects through the Delphi survey conducted by academia and field officials, but als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from a holistic viewpoin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improvement of the 'rainbow bridge projects' support system, the linkage of related institutions of the cultural diversity archive, the expans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research school, the training of the cultural diversity specialists and the education of policy personnel, Diversity indicators, and trend analysis.

부록

델파이 조사지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 방안 델파이 조사 1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은 현재 8년차에 접어들면서 사업경험을 누적하고 있는 한편 국회 및 보조사업 평가 등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적절성, 효율성 등에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참여자의 신상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정책자료 목적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통계법 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
연구책임 : 정보람 연구원
제출처 : 123@kcti.re.kr
문의전화 : 02-2669-9861

- 작성 요령 -

제공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현황과 주요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항목별로 사업의 적격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1. 사업형태 및 규모

〈국회 등 주요 지적사항〉
○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 및 재정규모의 적정성 미흡, 대표 콘텐츠 미흡을 지적받음

〈전문가 주요 지적〉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의 주요 성과제표는 무지개다리사업의 참여자, 인식개선 실적 등이나 무지개다리사업은 1개 주관기관당 1억원 미만, 최소 4천만원 수준의 소규모 예산사업으로 정책성과를 나타내기에 한계
○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보조사업 지원 위주의 사업체계는 사업별 예산에 맞춘 실행에 중점을 두고 문화다양성 정책 메시지의 효과적 전달이 부족해 사회 인식 제고에 한계

Q1. 2019년 현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사업예산 2,513백만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 의견과(과소, 과대, 적정) 그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Q2. 실질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사업형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세요(기존사업, 신규사업, 연계사업 모두 포함 자유롭게 작성)

Q3. 기타의견

2. 실행체계

〈국회 등 주요 지적사항〉

○ 지역별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에 차이가 있어 주관기관별 문화다양성 사업의 지향점이 상이하고, 문화다양성 가치는 중요하게 판단하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전략적 성과관리는 미흡한 수준

○ 2015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에서 사업주관기관을 매년 선정하는 대신 계속프로그램 위주의 운영과 각 지역문화재단의 네트워크 워크숍,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 부적절한 이·전용을 방지할 것을 요구받음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3년간 다년지원을 고려하여 사업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주관기관 네트워크 워크숍과 기관별 전문가 컨설팅 지속 추진하고 있음

〈전문가 주요 지적〉

○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참여 행정인력 다수가 계약직으로 구성 됨, 이에 지역의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행정인력의 업무 연속성 단절로 사업 운영 안정화 저하 발생

○ 현재 사업 지원에 있어 광역재단과 지역재단의 구분이 모호함.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Q1. 현재 무지개다리사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찬성하실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Q2. 현행대로 무지개다리사업이 지역의 문화재단 혹은 문화단체에 문화다양성 사업 수행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Q3. 무지개다리사업이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을 구분하여 무지개다리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Q4. 기타의견

3. 사업효과성 제고 방안

〈국회 등 주요 지적사항〉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문화적 표현과 향유, 창작에 차별받지 않도록 함에 목표가 있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고 소수계층에 대한 수용도는 낮은 실정

○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성과제고 시스템(모니터링과 환류) 미흡을 지적받음

○ 성과지표가 대부분 투입(input) 지표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의 근본적인 목표인 효과성(output)과 결과(outcome)를 확인할 수가 없음

Q1. 현재 무지개다리사업의 참여자 수, 인식도 등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가에 대한 의견과 바람직한 평가방식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 문화다양성 사업이 실질적인 인식 제고 효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모니터링과 환류 시스템, 성과지표 등 자유롭게 제안

Q2. 기타의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 방안 델파이 조사 2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7일~14일까지 7일간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마쳤고,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범주화 한 문항에 대해 동의(중요)하는 정도**를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사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참여자의 신상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정책자료 목적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통계법 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
연구책임 : 정보람 연구원
제출처 : 123@kcti.re.kr
문의전화 : 02-2669-9861

- 작성 요령 -

다음은 표에 제시한 각 항목들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파악한 것입니다. 개선방안에서 중요하다고 동의(중요)하는 정도에 V를 표시해 주십시오.

※ 동의(중요)정도가 높을수록 5점, 낮을수록 1점에 가까움

1. 사업형태 및 규모

Q1.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예산 2,513백만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 의견과 이유

요소		동의 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과소	현재의 무지개다리사업 대상과 규모에 비해 예산 부족					
	현재의 교육, 정책지원(연구, 홍보, 네트워크 등) 등 다수의 인식개선 사업 예산 부족					
	향후 문화다양성 범위가 국가 전반의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향후 소액다건보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과대	현재의 민간경상보조 방식의 사업구조 상 예산 과다					
기타	현재의 문화다양성 사업방향이 모호하여 예산규모 판단 어려움					

〈기타의견〉

Q2.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사업형태

요소	중요 정도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인 대국민 인식조사, 문화다양성 지표측정 및 지수비교 등 연구조사 및 평가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영향평가의 다양성 지표 보강으로 모든 사업에 다양성 반영					
문화다양성, 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패키지) 및 도시 간 협력 지원					
권역별 문화다양성 지원 센터 조성 및 유관기관(문화재단, 다문화센터 등) 연계사업 추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소수자와 다수자 간 상호교류 네트워크포럼 등 프로그램 확대					
방송, SNS 등 미디어를 통해 문화다양성 사례, 홍보, 이해와 인식개선 등 확대					
문체부와 통일부,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등 타 부처와 협력사업 추진(문화다양성위원회 가동 등)					
문화다양성 실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중간 조직 활성화 지원					
개도국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해외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과 연계 강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예술 창작활동 지원					
현재의 무지개다리사업을 보완(실행체계, 성과관리 등) 규모 확대					

〈기타의견〉

2. 실행체계

Q1. 현재 무지개다리사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유

요소		동의 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찬성	지역별 이슈 보다는 소수자 및 소외계층 등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관성적인 사업 기획, 지역별 차별화 진단 역량이 미흡하다 판단					
반대	주관기관이 계속 사업으로 경험을 누적하는 점, 지역별 활동가의 참여가 낮지 않는 점 등으로 지역별 특성 반영 판단					
	주관기관이 지역현황에 맞춰 계획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판단					
기타	지역별 특성 자체가 무지개다리사업에서 중요한 평가요소가 아님(기존의 문화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의 차별화 부족)					

〈기타의견〉

Q1-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

요소	중요 정도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화다양성의 도시를 선정, 도시 내에 무지개다리 사업 포함 다양한 사업 지원(도시별 약 6억원 규모) 도시의 변화(사전/사후) 및 성과 모니터링					
지역 자체적으로 문화다양성 데이터 축적 및 활용 사업 유도(지자체 자체 실태조사에 다양성지표 추가, 지역 인구조사 분석 등)					
주관기관(문화재단 등) 내부직원의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및 인력양성, 전문인력풀 관리 등 추진					
무지개다리사업 우수 주관기관 인센티브 제도 및 성과확산 프로그램(노하우 공유 등) 추진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관기관과 지역 내 단체와 논의 및 협력정도를 성과관리에 포함					

〈기타의견〉

Q2. 무지개다리사업이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을 구분하여 무지개다리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요소		동의 정도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찬성	광역과 기초의 환경(포괄 인구, 지역규모, 행정업무 등) 특성에 따라 역할, 성과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 지원 필요					
	광역과 기초의 구분보다 광역도 단위 재단의 역할설계 필요(현재 광역시단위에서 성과가 많은 편, 광역시와 도의 상황 다름)					
반대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영역까지 지원 기회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 필요					
	광역과 기초와 무관하게 사업수행 역량이 우수하고 사업의 적절하다면 지원 필요					
	전국 기초지자체에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33% 기초지자체만 운영중) 광역과 기초 역할구분은 부적합					

〈기타의견〉

3. 사업효과성 제고 방안

Q1.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 제안

요소	중요 정도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 합동평가에 다양성 지표 포함, 실태조사 지속 등으로 지자체가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지표를 개발 및 점검하도록 유도					
개방성 정도, 창의력 증진 등을 패널조사로 다년간 시계열 측정으로 성과평가 필요					
정책목표, 법상 정의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재설정할 필요(현재는 모든 사람, 모든 사업이 대상)					
개별 사업 추진시, 기획단계부터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다년간 단계적 성과목표치를 설정					
개별 사업 추진시, 사전/사후 비교, 참여자/비참여자 비교 분석으로 성과평가					
개별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강화					

〈기타의견〉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발 행 인 김 향 자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9년 7월 8일
발 행 일 2019년 7월 8일
인 쇄 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

ISBN : 978-89-6035-773-0 93300



www.kcti.re.kr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93300
ISBN 978-89-6035-767-9